사회복지사 전문화 방안을 위한 **자격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정하균

● 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 일시: 2009년 10월 7일(수) 13:00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진 행 순 서]

- □ 접 수: 13:00 ~ 13:30
- □ 개회식 : 13:30 ~ 13:50
 - 사회자 : 원 명 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 내빈소개
 - 인사말
 - 정하균 국회의원
 -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표갑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 류기형 한국사회복지학회장

□ 주제발표 : 13:50 ~ 14:55

- 토론사회자 : 표갑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 발제자
 -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교육분과위원장)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이기영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총무)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 지정토론: 14:55 ~ 15:35

- 토론자
 - 이성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전국사회복지대학원장협의회 회장)
 - 문진영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고명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 박용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실장)
 - 조현순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 원장)
- □ 종합토론 : 15:35 ~ 16:00

[목차]

_ · ○ हें		 복지교육인증 대학교 사회복지학				_	원장)
_ O 人		2 사 자격제도 ·산대학교 사회				-	
○ 전		3 복지사 자격 ^조 대학교 사회복지				-	<u>년</u> 장)
0 0	문진영 고명석 박용오	(인제대학교 (서강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사회복)	공공정 ^최 사회교 ^요 지협의회	택대학원 ∤원 교수 실장)	교수) :)	81p. 85p. 93p.	
O	소연순	(부평건강가	성지원센	너 원상)		9 ¹ /p.	

【개회사】

국회의원 정하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님, 한국사회복지 교육협의회 표갑수 회장님, 한국사회복지학회 류기형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가꼭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조건과 위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3년 국가시험이 시작된 이후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발표와 논의를 통하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제도화된 자격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격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자질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유자격자의 과잉배출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은 미를 과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소중하고 뜻 깊은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 쪼록 이번 토론회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와 환경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얼마 전 한 인터넷구직사이트의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사회복지사가 꼽혔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직업전망이 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아동·청소년사업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복지를 담당해온 사회복지계의 역할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동·청소년관련 분야에서 일하고자 할 때는 아동·청소년분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담당해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우리 협회는 아동복지관련단체 및 사회복지관련학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사회복지계의 입장과 대안을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사만의 고유 업무인 '사례관리'가 수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사의 직무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협회 내 '사례관리제도화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에 대한 유사직종의 도전과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는 끈 임없이 이뤄질 것입니다.

몇 년전부터 평생교육정책의 확대로 인해 연간 6만여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교과목 이수만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점, 사회복지 교 육의 부실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곧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 자격제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현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위기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신 정하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발표를 해주시는 홍선미 교수님, 이기영 교수님, 이봉주 교수 님을 비롯하여 토론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표갑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가 시행되면서 439개의 교육기관(사이버대, 평생교육원 등 포함)에서 사회복지사가 1년에 5만 여명이 배출되는 등 사회복지교육의 기회가 넓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인력의 질 관리를 하고자 했던 목적과는 달리 사회복지인력 전체의 질적 저하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 비전공자와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14과목을 이수하여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과연 전문가인가? 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누구나 취득하는 자격 증인가? 에 대한 자성을 초래하였고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 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사회복지교육의 수 준을 낮추게 된 것은 아니었는지, 자격증 남발을 수수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으로서 대학의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자격증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자격취득 자의 직업적인 이득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적인 직무수행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을 갖추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의 권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어떻게 개선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도입,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등에 관한 중요 논의를 정하여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격조있는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류기형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한국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하균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계가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사회복지교육기관의 난립과 사회복지인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고 있고 외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통합관련 법령개정의 진행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전문성확보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세세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현행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교육인증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등에 관한 집 중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학문연구와 교육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각 영역을 맡아 연구하고 오늘 발표해 주실 홍선미, 이기영, 이봉주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토론을 맡 아 수고해주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정하균 국회의원님, 조성철 회장님, 그리고 표갑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국 사회복지계의 무궁한 발전과 개개인의 행복과 행 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주제발표1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홍 선 미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교육분과위원장

I. 들어가며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사회복지인력을 키워내는 사회복지교육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회복지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정립이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사회복지계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교육기관의 난립과 이로 인한 사회복지인력의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교육의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한국사회복지교육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복지교육이 현재와 같은 속도와 규모로 계속 팽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으나, 매년 배출되는 5만여 명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질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시급히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인 교육의 틀을 재구성할 때이다.

사회복지학계와 실천현장은 사회복지교육의 정상화와 질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사자격제도 이전에 사회복지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양질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의 틀 속에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에서는 2008년 사회복지교육실태조사를 하여 한국사회복지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 면서 사회복지교육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사회복지교육인증의 필 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홍선미외 2009). 이를 기초로 본 발표에서는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당면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적 기준개발의 지침이 되는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국제기준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사회복지교육제도와 인증실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복지교육의 틀과 인증기준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증인 타 분야의 교육인증제 운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교육인증의 형식과 절차적 요소를 고려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사회복지교육의 현실적 욕구와 여건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구성요소와 세부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뤄내는 과정에 고려해야할 실천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복지교육의 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사회복지교육의 문제점 진단(공급 및 교육제도)

1. 사회복지교육의 양적측면

2008년도 9월 현재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전공이 있는 교육기관의 수는 439개에 이른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2008).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사회사업학과에서 시작된 사회복지교육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실천현장이 생겨나면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학부의 사회복지학과나 대학원 교육과정 이외에 원격대학과 평생교육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이 생겨나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과목들을 개설하면서 사회복지교육의 대중화는 가속화되었다. 2002년도에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전국에 150개로 보고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김범수, 2003),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수가 급속히 팽창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한 교육기관 내에서도 유사한 명칭의 사회복 지관련 전공과정이 중복 설치되면서 전공교육의 정체성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학문 적 요구로부터 비롯된 사회복지 전문분야로의 심화전공이나 다학제적 전공과정의 설치이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과생존과 학생모집을 목표로 학생모집의 편의성 사회복지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전공을 만들어 사회복지사자격 취득과목을 중복적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로, 4년제 대학교에 개설된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학부의 명칭을 살펴보면, 가족복지, 가족상담복지, 복지상담, 소비자상담복지, 아동복지, 아동가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노인보건복지, 케어복지, 재활복지, 노인재활복지, 중독재활복지, 산업복지, 실버산업복지, 기독교복지, 인간복지, 스포츠복지, 자연치유복지, 복지행정, 복지신학, 복지경영, 지역및복지행정, 사회복지기관경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유사 전공까지모두 이를 고려하면 사회복지전공 및 관련전공의 개설 수는 총 609개에 이르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2008). 또한 유사학과가 아닌 학과나 전공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사회복지사 자격교과목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 이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어 사회복지교육의 과잉공급은 여러 방법으로 이어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복지학과나 관련전공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사회복지사자 자격증 과목들을 개설하여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이 많아 사회복지교육의 부실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2008년도에 사회복지교과목 이수조건을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발급을 신청한 자격증 신청자들의 출신교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학과나 유사전공학과 등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2급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2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선미외, 2009).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고등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자격증과목을 개설하여 2급자격증취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아래의 표와 같이,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은 일반적인 교육기관이나 학과 및 전공 현황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교육의 질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되늦게 무분별한 사회복지인력양성 과정의 난립과 과다한 사회복지인력배출로 인한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이혜경과 남찬섭(2005)은 1990년대 이후 생겨난 사회복지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사회복지학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며 더불어 사회복지학문이 갖는 정체성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무분별한 인력양성 과정의 난립'과 '과다한 인력(학생) 배출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난립과 그로 인한 전문성 저하에 우려가 실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

들은 사회복지양성과정이 지금보다 축소 및 정리 되어야 한다는 데에 강한 지지 의견을 피력하였다(이기영·최명민, 2006). 박태영과 이준상(2004)도 한해에 학교로부터 배출되는 예비 사회복지사의 수에 비해 실제 기관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는 한정적임을 지적하면서 유사학과들이 관련교과목을 개설하여 보너스 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 2> 전국의 사회복지 교육기관 현황

2008년 9월 30일 기준

	구분	사회복지학과/ 전공개설수	관련전공학과/ 전공개설수	학과/전공 합계	교육기관수	입학정원(명)
전	<u></u>	51	60	111	80	9,961
	대학교	116	93	209	149	12,682
	일반대학원	51	10	61	58	1,619
대학원	특수대학원	90	81	171	125	6,365
	전문대학원	8	16	24	11	188
원격	2년제	2	6	8	2	930
대학	4년제	13	12	25	14	6,120
	총계	331	278	609	439	38,158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2008)

2. 사회복지교육의 질적 측면

우리나라는 교과목 이수 후 국가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자격관리를 하는 일본형1) 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복지교육의 기회는 넓혀져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학점은행제 이수자에게도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자격증 교부자 수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표2 참조). 과목이수만으로 자격증을 발급받는 2급 사회복지사의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6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1급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인력의 질 관리를 하고자했던 목적과는 달리 사회복지인력 전체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¹⁾ 관련하여 본고의 3장 4. 일본사례를 참조할 것.

<표 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현황 2008년 8월 31일 기준

구	· 분	총 계	1 급	2 급	3 급
2002	당분기	16,126	5,319	10,492	315
2003	교부누계	85,449	45,834	29,857	9,758
2004	당분기	19,196	5,044	13,722	430
2004	교부누계	104,645	50,878	43,579	10,188
2005	당분기	25,354	4,421	20,348	585
2003	교부누계	129,999	55,299	63,927	10,773
2006	당분기	33,315	5,055	27,871	389
2006	교부누계	163,314	60,354	91,798	11,162
2007	당분기	45,552	4,445	40,823	284
2007	교부누계	208,866	64,799	132,621	11,446
2000	당분기	51,561	8,570	42,807	184
2008	교부누계	260,427	73,369	175,428	11,630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2008)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원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연속적인 교육과정의 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와 대학원과정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학을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과정과 차별화된 전문과정으로서의 운영이 어렵다. 특히, 대학원의 66.8%(171개)를 차지하는 특수대학원의은 각기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운영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문교육의 방향에 있어서도 학부의 사회복지교육은 유능성을 갖춘 일반주의 실천가(generalist)와 전문주의 실천가(specialist)사이에 혼란을 겪으면서 체계적인 지식과 실천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전공학점제'를 골자로 한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으로 인해 각 대학 및 학과들이 학부제를 도입하고 복수전공제를 실시하면서 졸업기준학점이 축소되고 전공교육이 부실화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적으로 유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전공 교

²⁾ 특수대학원은 현장실무자들의 재교육 과정으로서 제공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양성과정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과과정에도 각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과목들이 덧붙여져 사회복지 교과과정 내에서 사회복지학 고유의 목표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전문성 및 정체성 확립 등을 이유로 복수전공을 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58.9%)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복수전공을 허용하자 는 실무자의 88.9%도 복수전공을 한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최소학점으로 줄여서는 안 되며 사회복지 단수 전공자만큼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더 하여 다른 전공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기태 외, 2005). 이는 학사교육과정이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복수전공제나 졸업기준학점 의 축소 등은 이론과 실천 양쪽을 모두 병행하여 전문성 확보에 주력해야하는 사회 복지학의 교육적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전문 성 및 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지교육은 사회복지사자격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교과과정이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이라는 사회복지사자격시험을 위한 교과목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 심화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전공이 아닌 경우에도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교과목만을 선택함으로써 사회복지전공의기초가 되는 지식이나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교과목지침서에 따르면 실습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3학점 3시수를 기본으로 15주 동안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학점과 시수를 자율적으로 적용해도 모두 동일하게 과목이수로 인정받는 상황이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이 기간이나 시간의 구애 없이 쉽게 딸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라고 현혹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다3).

사회복지사자격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는 사회복지교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인증분과위원회4를 통해 사회복지 학부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제한하여 회원교인증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학과의 전체교원 3분의 2 이상이 사회복지전공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건을 충족해 회원교가 된 교육기관이 67개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원과정만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³⁾ 실제로 모 대학의 경우 산업체 위탁생을 모집하여 학교 이외의 교육장에서 주말교육으로 교과목 이수를 인정해 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보된 바 있다(김범수 외, 2006).

^{4) 2009}년부터는 자격관리위원회로 회원교가입자격심사기능이 이전되고, 인증분과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심사와 인증업무를 담당하게 됨.

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의 연계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사회복지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를 고려할 때 소수 회원교에 제한하여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교육의 정체성을 담보하지 않으면서 교과목만 개설하여 사회복지인력을 파행적으로 배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정 14과목으로 자격기준을 한정하는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나, 인증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질적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III. 해외의 사회복지 교육인증체계

1.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의 국제기준

국제사회복지교육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 Social Work)에서는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의 국제기준(Global Standards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Social Work)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IASSW, 2005).

- 1) 교육기관의 목적/사명(School's Core Purpose or Mission Statement)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설립목적과 사명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목적과 사명이 정의적 절차 로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참여를 존중한다.
- 2) 프로그램 목적과 결과(Program Objectives and Outcomes)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기대되는 결과를 명확히 한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반영하며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지식, 기술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은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심리적 요소를 고려하며 실습교육도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되도록 한다.
- 3) 현장실습 프로그램(Program Curricula Including Field Education) 교육의 목적과 결과, 사명에 따른 훈련과정과 방법,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전달체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습개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습생에 게는 현장실습시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와 실습기관간의 교류, 자격을 갖춘 실습수퍼바이저,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며 실습기준

과 절차,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실습메뉴얼을 갖추도록 한다.

4) 핵심 교과과정(Core Curricula)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 전문 가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4개 영역의 핵심교과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사회전문가 영역(Domain of the Social Profession)로서 사회구조적인 문제, 차별, 억압, 사회.경제.정치적 불리의 문제, 인간행동발달과 사회환경에 관한 지식, 인간의 기능과 발달에 미치는 집단적. 사회적 영향력 등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는 사회복지 전문가 영역(Domain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로서, 반영적 실천가로서의 자기발전, 가치체계, 윤리의식,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는 사회복지실천방법론(Methods of Social Work Practice)으로서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 지식과 기술의 적용, 관계형성과 원조과정의 기술, 조사방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넷째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시각(Paradigm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서비스이용자의 권리와 옹호, 강점과 임파워먼트,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내용이다.

5) 교수요원(Professional Staff)

사회복지전공 또는 관련분야의 석사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되어있다. 교육의 목적과 사명 등에 대해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가로서의 발전, 임용에서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행정적 업무와 조사연구 및 출판, 사회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다.

6) 학생(Social Work Students)

입학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학생모집과 입학정책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소수자집단에 대한 기회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학생의 동기와 적성,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과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생들의 학업수행능력과 현장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추고 다른 요소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갖추도록 한다.

7) 조직, 행정체계와 자원(Structure, Administration Governance and Resources) 사회복지교육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환경과 행정역량, 내적.외적 자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업무환경, 예산, 물리적 공간과 설비, 자원 등이 적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문화적.민족적 다양성과 양성통합(Cultural and Ethnic Diversity and Gender Inclusiveness)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과 성인지적 민감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경험을 제공하며 문화적 가치와 신념 등을 포함하는 자기인식 개발의 기회와 차별과 편견을 최소화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권 및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9)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Value and Ethical Codes of Conduct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

전문직의 핵심요소로서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이 강조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수는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하며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제기관이나 별도의 규제절차에 따라 적절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사례

미국은 사회복지교육의 역사 뿐 아니라 인증제도 측면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과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격취득시험을 통한 사회복지사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시에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인증을 통해 사회복지교육의 질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홍선미외, 2009).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문사회사업교육의 틀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 관리 면에서 차이를보인다. 미국에서는 2008월 6월 현재까지 이 인증제도에 의해 학사과정 463개, 석사과정 191개 등 총 654개 과정이 인증을 받았으며, 학사 17개, 석사 19개 등 36개 과정은 인증후보로 등록통한 있다. 인증은 교육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졸업생의 지위나 향후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서 그 결과가 일반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교육인증제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회복지교육협의회(Commission on Social Work Educatio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교육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은 막강하다. CSWE 내에서 인증을 수행하는 조직인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에서는 사회복지교육기관에 대한 위의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증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사회사업전문대학원이나 학사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기준들에 따른 지표 및 평가과정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기준이나 관련한

운영제도들은 그 엄격성의 수준이 높다.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들이 존재하나(Kagle, 2001), 근본 취지에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인증기준들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사회는 인증위원회 업무를 인가하는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올라온 사회사업전문대학원과 학사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준과 정책을 공인하고 평가 및 인증 지표와 방법을 승인한다.

CSWE에서는 교육정책 및 인증기준(EPAS: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에 따라 미국의 사회복지교육기관에 대한 인증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SWE, 2008). 교육정책은 사회복지교육의 목표에 따라 각 교육과정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은 교육정책에 근거하여 학사 및 석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SWE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는 위에서 살펴본 사회복지교육과 훈련의 국제기준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프로그램의 사명과 목적, 명시적인 교육과정, 교육환경, 평가체계와 관련한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1) 목적과 사명

각 사회사업 교육프로그램의 사명과 목적은 전문직의 목적과 관련성을 갖고 전문직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미국은 각 과정의 명시적인 교육목표를 강조하여, 학위과정은 교양과정의 지식과 더불어 앞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유능성을 겸비한 일반주의 실천가를 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문실천가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원(MSW과정)에서는 폭넓은 다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고 적용하며,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정, 개입, 평가를 위한 훈련을 통해 특정 분야의 핵심적인 유능성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2) 명시적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적 구조로서 교양과 기초, 전문 교육과정의 틀로 구성된다. 교육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하나를 예로 들면, 학사학위 과 정은 일반주의 실천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양과정의 지식과 더불어 일반 주의 실천에 따른 사명과 목적에 적합한 핵심적인 유능성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SWE(2008)에서는 일반주의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유능성에, 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갖고 이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② 사회복지실천윤리의

원칙을 전문적 실천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 ③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알리고 의사소통 하는 것, ④ 실천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 ⑤ 인권과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진전시키는 것, ⑥ 조사에 기반을 둔 실천과 실천에 기반을 둔 조사를 하는 것, ⑦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 ⑧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을 실천해 가는 것, ⑨ 실천을 형성하는 사회환경적 맥락과 변화에 대응하는 것, ⑩ 개인, 가족, 집단, 조직 및 지역사회에 대해 관여하며, 사정. 개입 및 평가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유능성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교육과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가와 지식, 가치, 기술 등이 각각의 유능성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의 다른 한 형태인 석사과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에 관한 풍부한 유능성을 갖춘 실천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적 실천은 폭넓은 다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동시에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정, 개입, 평가를 할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석사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실천에 맞는 사명과 목적을 제시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전문적인 실천에 적합한 유능성을 어떻게 습득하도록 할것 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에서는 전문 분야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분야별 지식과 실천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현장실습교육이다. 실습을 통해 강의에서 배운 이론과 개념, 증거기반의 실천을 현장에 적용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핵심적인 유능성 습득과 전문성향상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현장실습의 인증기준으로서 학부과정에서는 최소 400시간, 대학원 과정에서는 최소 900시간 이상의 실습이 요구된다. 각 학교의 실습 프로그램은 기관선택, 실습생 자격기준, 학생의 배치 및관리, 현장과 학교의 연계, 학생의 학습 및 현장의 효과성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갖고 있다. 실습지도자는 학사과정의 경우 CSWE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석사과정의 경우 CSWE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3) 교육환경:

- (1) 다양성 : 각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2) 학생발달 : 전문직의 시작절차로서 입학과 관련된 명확한 질적 평가 기준이 있

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수진이나 직원들이 학생을 상담하는 체계와, 학생들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

- (3) 교수진 : 담당 과목에 대한 경험을 포함한 교수의 질적인 측면과 교수 : 학생의 적정 비율은 사회복지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은 교육과 실천 측면에서 각 교수의 자격, 유능성, 전문성, 경력 등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을 교육하는 교수는 CSWE에서 인증한 석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실천현장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교수진의 규모, 학급 당 학생 수 등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최소 기준으로서, 학사 프로그램에 서는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이 1:25, 석사 프로그램에서는 1:12로 규정되어있다. 학 사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복지 소속의 학부 전담 전임교수 2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 고, 전임교수 중 최소 2명 이상 또는 다수가 CSWE에서 인증한 석사 및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또는 CSWE에서 인증한 학사학위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 야 한다. 이에 비해 석사 프로그램은 최소 CSWE에서 인증한 석사 학위를 가진 6명 의 대학원 전담교수가 있어야 하고, 전임교수의 과반 수 이상이 사회복지 석사 및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교수진들은 교사, 학자, 실천가로서 전문적 이며 지속적인 자기개발과정이나 외부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들 교수진들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전문직의 행동과 가치의 모델을 보여줄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운영 구조 : 사회복지 교수진과 교육과정 운영자들은 자율적으로 사회복지교육에 적합한 관리 및 지도 체제를 갖추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교수진들이 인증 기준 및 기관의 정책에 맞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교수진과 운영진이 인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등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학사과정과 석사과정에는 자격을 갖춘 책임자(학과장이나 전공주임)를 각기 임명해야 한다. 학사과정의 교육책임자는 교육, 연구, 교육과정 개발, 행정경험 및 사회복지 실천 및 학문적 활동을 통해 지도력을 갖춰야 하며, CSWE에서 인증한 석사자격증과 박사학위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 CSWE에서 인증한 학사학위와 사회복지분야박사학위를 가진 자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학사과정운영의 책임자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교육 및 행정 책임자로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최소 25%)을 배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석사과정의 책임자 역시 학사과정의 책임자와 동일한 능력이 요구되나, 학위에 있어

서는 CSWE에서 인증한 박사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석사학위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외 모든 사항은 학사과정의 책임자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나, 책임자로서 활동하는 시간이 업무시간의 최소 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책임자로서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자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은 유능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각 교육기관은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적 자원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예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평가체계

사정평가 체계는 유능성에 기반을 둔 교육모델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교육과정이 유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공지되어야하며, 보다 유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 내재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한절차, 측정도구 등의 계획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명시적, 내재적 교육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3. 일본 사례

일본은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수준과 종류가 다양하며 교과목 이수 후 국가고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교육 현실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수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후생장관이 지정한 12과목5)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대학의 경우에는 이외에 실무경험을,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양성과정 수료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사회복지교과목 이수만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지정한 이후, 교과목만을 개설하여 사회복지교육을 하는 학교의 수가 팽창하였고 이에 따라교원수 부족과 대학교육의 획일화 현상이 이어졌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더 교육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교육 내용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으며, 교육과 관련된 협회들도 다양하게 활동하는

^{5) 12}과목에는 사회복지원론, 노인복지론, 장애자복지론, 아동복지론, 사회보장론·공적부조론·지역복지론 중 한 과목, 사회복지원 조기술론, 사회복지원조기술연습, 사회복지원조기술현장실습, 사회복지원조기술현장실습지도, 심리학·사회학·법학 중 1과목, 의학일반, 개호개론 등이 포합된다.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을 중심으로 일본 내사회복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현황파악이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성 속에서도 적정 기준을 지키면서 사회복지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교를 중심으로 교육 및 실습의 기준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자료, 2008).

우리나라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사회 복지교육학교연맹은 임의 학술 연구단체로서, 1955년 일본 사회 복지 학회로부터 분리하여 창설된 이래로 일본의 사회복지학 교육연구의 국가적 센터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연맹의 창설 당시 17개 대학에 그쳤던 가맹교는 2002년도에는 176교, 2008년6월 현재는 193개교에 이르고 있다(학부기준). 연맹에서는 학부과정의 기능을 총체적인 사회복지교육을 담당하는 것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칠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정으로 사회복지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국제 사회복지교육협회(IASSW)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석사과정 91개교, 박사과정 50개교 등에서는 연구조사 훈련, 분야별전문적 실천가 양성, 평생교육, 의료 및 간호와 연계되는 영역에 대한 연구, 국제교류 및 지원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의 질과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삼고, 사회복지학 교과과정의 개발, 교과목 지침제시, 교육방법 및 교재 개발, 가맹교 심사기준의 책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맹에 가입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가입 기준이나 그 절차 등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2005년 3월에 제정된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가맹의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표 3>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가맹기준

구분	4년제 대학 가맹심사기준	단기 대학 가맹심사시준
개요	·사회복지학 교육커리큘럼이 각 호로 내거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각 대학은 미리 자기점검 후에, 기 본적으로는 학과 단위로 신청함. 신청은 학과단위가 원 칙이나, 학과형태가 아니거나 복수의 학과로 학부구성 이 충실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함.	•4년제 대학과 동일함.
교원	·사회복지학과 체제에 준 해 「기본」 「응용」 「실습·실습지도」각 부문의 과목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6명 이상의 전임 교원이 담당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전	는 전임 교원 3명 이상

^{6) 2008}년 6월 현재 일본의 가입교는 82개교로 파악되고 있음

	임교원은 각각 4개 부문에 적정하게 배치되어 과목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복지학의 전임교원은 사회복지 전문교육과정을 가르칠 뿐 아니라 실천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함 ·신청 시에는 전임 교원의 담당 과목, 실적, 가입 학회, 학위(취득 대학)를 제출해야 함. 전임 교원의 사회복지 전공관련 실적 및 사회복지 관련 가입학회를 증빙하는 자료는, 해당 교원이 사회 복지 전공자인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임 입회 신청 시에 부임예정인 교원과 개설예정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과목담당 예정자의 실적과 가입 학회 및 개설 예정 과목의 강의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_
교과목 구성	·교과목은 「기본」 16단위 이상,「응용」30단위 이상, 「실습·실습지도」 10단위 이상,「관련 영역」10단위 이 상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의 구성은 각 대학의 교육 목적, 이념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고유의 것으로 함. 단, 각 부문의 과목 배치는 유연성을 인정하되, 신청 시 각 부문에 있어서 과목 배치의 근거를 대고 각 과목 담당 자의 강의 실시 요강을 제출할 것. ·강의실시요강은 예시 과목의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로 서 ① 수업의 목적, ② 수업의 개요, ③ 해당학기의 수업일정에 대해 기재함	· 사회 복지학 교과목은 4년제 대학에 제시된 「기본 영역」「응용」 「실습·실습지도」 및 「관련 영역」에 준하 되, 교육의 양은 4년제 대학의 2분의 1이상으로

출처: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자료(2008)

IV. 우리나라의 교육인증제 실시현황

1. 고등교육 인증규정

「고등교육법」제11의2제3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7·인증8)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제시된「고등교육 평가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제4조(조직·기구 및 인력 등 체제 관련 지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인증기관이나 단체에 관한 기준으로는, ① 평가·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관

^{7) &}quot;평가"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관이 학교 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8) &}quot;인증"이란 인정기관이 학교운영의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 ③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 ④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과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常勤) 평가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⑤ 평가・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이 있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인증 실시를 위한 재정·예산과 관련하여, ① 평가·인증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을 것, ②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으며,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③ 평가·인증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기준이 있을 것 등의 기준이 있다.

인정기관은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이 정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기관 평가·인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 포함)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인증기관은 공정한 평가·인증의 기준과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인 평가·인증의 내용을 재검토한다. 또한, 명시적인 평가·인증의 판정기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시절차에 대한 안내자료 및 양식, 평가·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수행실적이 있거나, ② 국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을 것, 신청기관의 평가・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③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것, ④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표 4> 인정기관 지정 기준

구분	기 준
기본	1. 평가·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부합할
요건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평가·인증 대상기관이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한 실적이 있을 것
	4.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
행・재정	1. 평가·인증 업무 실시를 위한 자체적인 조직, 인력 및 예산이 있을 것
요건	2. 평가 · 인증 전문가, 학문 분야 전문가 및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 · 인
	증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평가·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연수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평가・인증	1. 평가·인증의 기본방침과 기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평가·인증실시요강을
기준	갖추고 있을 것
	2. 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인증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
	3. 학교의 특성화 또는 학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 기준이 있을 것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기관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급은 3가지로서, ①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신청기관이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유효기간 내에 평가·인증 실적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③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기관으로서,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2. 교육과정 인증사례

1984년에 제정공포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근거로 전국 4년제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94년부터 신설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학부 또는 학과를 평가단위로 하는 학문분야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2002년도에 48개 대학이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가 모든 학문분야의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학문분야별 평가와 인증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문분야별 교육인증을 위해 별도의 인증원을 설립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경영학과 공학 분야의 인증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영교육 인증

경영교육인증은 한국경영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기관별 경영교육의 특성화와 체계적인 관리 등을 목표로 한다. 인증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한 4년제 대학교에서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대학 또는 학부(과)이며,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을 통해경영학교육을 위한 인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영학 교육의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인증기준은 7개 분야로서 다음과 같다(한국경영교육인증원, 2007).

(1) 비전.미션 및 목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목표가 소속대학교 또는 대학의 설립목표나 장기계획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세부계획을 통해 설립목표나 장기계획을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살피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목표나 장기계획이 조직 구성원 간에 공유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지를 평가한다.

(2) 학습성과 및 평가

학생이 졸업시 갖추어야할 능력과 지식을 일반적 능력과 경영학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각 능력과 지식을 반영하는 학습성과목표는 교육기관의 목표와 장기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교육기관이 설정한 구체적인 학습성과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평가하도록 문서화된 절차와 구체적인 척도에 의해 학습성과가 측정되도록 한다.

(3) 교육과정과 수업

교육기관의 전공과목과 선택과목의 배분에 관한 적정성 및 수업관리현황을 평가한 다.

-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되고 운영되어야한다.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검토, 교과목의 신설과 폐지 등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하도록 한다.
- 최소 경영학 전공이수 학점 및 전공필수과목: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45학점이상이며, 경영학 전공필수과목을 총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필수과목

- 의 수강인원을 60명 이내로 하는 분반기준을 갖는다.
- 인턴십프로그램: 학생들의 경영실무능력을 키우는 인턴십프로그램이 학점과 연계된 정식과목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교육기관은 인턴십프로그램의 대상기업, 기간, 학점취득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도록 한다.
- 그외, 과목 신설 및 폐지, 수업분반, 과목 전 학기 개설, 강의계획서, 새로운 강의 기법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학생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며 학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기회제공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입시제도별 입학기 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학생선발 및 졸업기준
- 학업성취도 평가
- 학생지원 및 장학금
- 취업 및 졸업생 관리
- 편입생, 전학(과)생, 복수 및 이중·부전공자에 대한 정책
- (5) 교수진: 교수인적자원의 양과 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교수의 연구역량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를 평가하며,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승진·호봉승급 등이 원칙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를 평가한다.
- 교수의 수: 자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전임 및 비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준으로는 ① 지난 1년간 두 학기에 개설된 전공과목중 전임 및 비전임교수 담당강좌수/전체강좌수 비율이 최소 60% 이상, ② 전임교수담당 강좌수/ 전체강좌수 비율이 최소 40% 이상, ③ 각 전임 및 비전임교수의 강의부담은 학부, 대학원 강의를 포함하여 학기당 4과목,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교수의 자격: 높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진은 학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나 해당 강의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학문적인 자격은 경영학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의미하며 전문적인 자격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또는 임원급이상의 전문경영인으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 교수 평가 및 지원: 교육기관이 전임교수들의 교육, 연구,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승진, 승급 등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강의평가도입을 통해 강의에 대한 평가와 강의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교수진의 동기부여와 강의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수들의 교내외 봉사활동, 기업과의 협력활동과 같은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업적평가기준을 정해 반영하도록 한다.

(6) 시설 및 교육환경: 교육기관의 목표와 장기계획달성에 적절한 시설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속대학교 및 대학차원에서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과 자체 자금조달 성과가 해당 대학 또는 학부(과)의 목표와 장기계획달성에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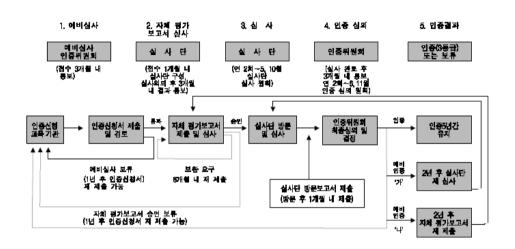
(7) 교육개선

해당대학 또는 학부(과)의 교육목표 및 장기계획 달성을 위해 학습성과 및 평가,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 교수진, 시설 및 교육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는 가를 평가한다.

위의 7개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5년간 인증이 유효하게 된다. 약간의 부족한 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7개 기준에 대해 충족된 경우에는 실사단이 2년 뒤 재심사전까지 충족시켜야할 조건을 표시하고 2년간 예비인증자격(예비인증 '가')을 부여한다. 7개 기준증 6개 기준에 대해 충족하고 향후 2년 내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 실사단은 교육기관이 2년 내 부족기준을 보완하고 2년 후 자체평가보고서를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사 재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예비인증자격(예비인증 '나')을 부여한다. 심각한 부족사항이 있거나 7개 기준 중 6개미만의 기준만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보류한다. 인증보류시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뒤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절차는 예비심사와 자체평가보고서심사, 실사, 인증심의, 인증결과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이 경영교육인증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인증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자격구비여부를 심사한다. 예비심사 통과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신청기관당 4명의 실사단을 구성하여서면심사와 현장실사업무를 담당한다. 실사 후 실사단이 합의한 최종방문보고서와인증여부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면, 인증위원회는 인증여부와 조건에 대한 결정을내려 해당교육기관에 통보한다. 인증은 등급이나 기타 서열적 구분이 없이 정해진

최소기준을 통과할 경우 인증이 부여되도록 하며, 인증결과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과 관련단체에게 전국경영대학 현황자료를 통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경영교육 인증절차

2) 공학기술교육 인증

공학기술교육인증은 공학분야 교육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졸업생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보장하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 진출에 도움을 주며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년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전문학사학위과정과 2년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인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이 대상이된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인증을 통해 공학기술교육의 학위과정이 수요지향이며성과중심의 교육체계를 갖추도록 8개 분야의 인증기준을 공통인증기준과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공통인증기준과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학위과정 명칭이 두 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포함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 (1) 교육목표: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목표가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이념 및 자체역량에 부합하고 측정가능토록 설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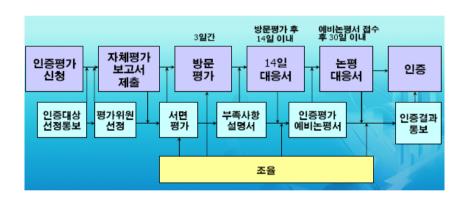
- 교육목표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교육목표달성은 주기적으로 측정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 교육목표의 달성도는 구성원의 요구 및 자체역량평가와 함께 학위과정 개성에 반 영되어야 한다.
- (2) 졸업생역량: 학생이 졸업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과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졸업생역량별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취수준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절차로 평가되어 그 결과가 교육과정개선에 반영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졸업생역량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 (3) 교과영역: 교과영역 및 교과목은 학위과정의 교육목표 및 졸업생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있다.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의 필수 교과영역과 최소이수학점을 예로 들면,
-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의 각 분야별 1개과목 이상으로 최소 15학점을 이수.
- 공학기술주제는 종합설계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80학점.
- 전문교양은 최소 9학점.
- (4) 학생: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학업수행능력은 인증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교육기관은 학생에 대한 평가, 상담, 관찰을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도록 한다.
- 학생에 대한 단계별(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평가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결과가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에 대한 상담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 모든 졸업예정자가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등)을 위해 별도의 수용정책과 취득학점 인정 절차를 갖도록 하고 있다.
- (5) 교수진: 교수진은 학위과정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학위과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증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인증기준의 세부항목은
- 교수의 수: 교과과정의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교수, 강의부담이

적절하고 학생지도가 충분한 수의 교수.

- 교수진의 자질: 교육 및 실무경험,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노력, 산업체 및 전문직업인과의 유대.
- 교수-학생 유대관계 및 교수의 학생지도.
- 교수의 교육활동 평가: 교수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기계발프로그램, 교수의 교육개 선활동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 (6) 교육환경: 교육기관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의 질이 유지되도록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 대학의 지원: 학위과정의 질과 계속성을 보장하도록 대학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시설 및 장비: 강의실은 효율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갖추며, 실험·실습·설계를 위한 적절한 장비가 구비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하고, 학습정보의 접근과 자료처리를 위한 전산 및 정보처리 시설이 충분하여야 한다.
- 재정지원: 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시설확충과 최신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하며, 실험. 실습. 설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한다.
-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학사와 학생지도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있어야 하며, 교육활동을 보조할 교육보조인력을 두도록 한다.
- (7) 교육개선: 인증기준의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이 있어야 하며 관련한 자료들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학위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계획·실행되어야 하며, 그 근거와 결과물이 문서화되어 관리되도록 한다.
- 교육개선: 이전 평가에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한 개선실적과 학위과정의 내부에서 수행된 평가자료와 외부에서 취합된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교육개선방안을 수립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발전계획: 학위과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이 순환형 자율개선구조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학위과정의 수준은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학위과정의 수준과 비교·검토되도록 한다.
- 자료관리: 학위과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자료의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은 위에 제시된 공통인증기준과 달리해당 주관학회와 유관학회가 작성하여 공학교육인증원의 승인으로 제정된다. 현재는 4개 학위과정(건축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 기계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 전기.전자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 컴퓨터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안(적용범위, 교수진, 교과과정)이 제시되어있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절차는 인증평가 대상 선정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제출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른 평가위원의 사전검토와 서면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서면평가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한 현장평가 -> 평가 의견에 대한 조율과 피인증기관의 소명기회제공 -> 인증판정의 과정을 거친다. 인증의 종류는 졸업생 유무에 따라,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인증'으로 판정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나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하고졸업생 배출 시 '인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평가단 구성은 평가단장 1인, 평가위원 1-2인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참관인 1-2인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림 2> 공학기술교육 인증절차

V. 사회복지교육인증체계 개발

1. 사회복지교육인증제에 대한 욕구

사회복지교육 인증체계란 사회복지교육기관이 적절한 전문사회복지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해나갈 수 있는 여건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본 논의는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사회복지분야의 교육에한정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제한한다.

그간 사회복지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사회복지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다수이며비회원교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전공생의 모집과 교육, 자격증발급에 어떠한 불이익을받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한계를 보여 왔다. 전체 사회복지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한된 회원교에 대한 질 관리를 수준을 벗어나 모든 사회복지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교육이 제공되기 위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교육의 충분성을 갖춘 학교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교육인증제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회복지교육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교육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교육 인증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1천860명(60.2%)은 '매우 그렇다'로, 1천231명(39.8%)은 '그렇다'로 응답해, 조사대상자 전체가 사회복지교육 인증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요건으로는 교수의 자격요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사이버 대학 및 학점은행제 등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의 자격요건으로, 1천911명(61.8%)이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50명(21.0%)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약 83%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사회복지전공 학위 소지에 대해서 1천557명(51.4%)은 '반

⁹⁾ 본 결과는 2009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천91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된 분석자료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 1천904명(61.6%), 남자 1천187명(38.4%)이며, 연령은 20대 816명(26.4%), 30대 744명(24.1%), 40대 916명(29.6%), 50대 이상이 615명(19.9%)이다. 응답자의 직위는 기관장급이 380명(12.6%), 상위 관리자급이 232명(7.7%), 중간 관리자급 425 명(14.1%), 실무급 1천90명(36.2%), 계약직 및 기타가 882명(29.3%)이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9명(0.3%), 전문대졸이 755 명(24.6%), 대학교 졸업이 1천426명(46.4%), 대학원 재학 이상이 883명(28.7%)이며, 사회복지관련 총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1천123명(37.4%), 1년 이상 5년 미만이 1천77명(35.9%), 5년 이상 10년 미만 513명(17.1%),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82명(6.1%), 15년 이상이 107명(3.6%)이다.

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천18명(33.6%)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85%가 2개 이상의 사회복지전공 학위 소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일정기간 사회복지 실천경험에 대해서 2천46명(68.6%)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24명(27.6%)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96%가 일정기간 사회복지 실천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 전공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로 전공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약 80%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1천497명(48.4%)은 '매우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응답하였고 1천34명(33.5%)이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응답했다. '학위의 종류보다 교수의 열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는 별 상관없다'라고응답한 경우(15.0%)도 있으나, 다수인 약 82%정도가 교수의 전공학위와 관련한 자격기준이 사회복지 교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2. 사회복지교육인증의 기준과 절차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질 관리와 사회복지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교육과정의 인증내용에는 사회복지교육기관과 교육자, 교육대상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간에 대해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며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좁게는 교육의 공급주체인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여건, 교육자의 이론적 성향과 학문적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교육의 틀은 달라지며, 넓게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교육의 체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타 분야의 인증제시행과정과 유사하게, 사회복지교육인증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학문분야의세부 인증기준과 시행지침을 마련할 뿐 아니라 공청회와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해인증에 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인증주체

사회복지교육인증을 실시할 기관의 권위는 인증제 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교육인증을 실시하는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교육인증도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행해 온 학문분야 평가를 민간인증기구에서 시행하는 인증평가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증사업을 시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회원교 대부분이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교육의 전반적인 질

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관으로 서 적합한 주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인증기관의 기준을 검토할 때, 한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평가·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인증분과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외부 평가업무보다는 회원교의 가입자격을 심사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상근평가지워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인증기관자 격으로 제시된 평가·인증 업무종사자 대상의 연수실적이나 사회복지 교육분야의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 인증 수행실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기관이 평가실적과 같은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 인정 기관으로 지정후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지정에 따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평가·인증을 위한 상근조직을 갖추고 평가·인증 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 인증업무를 시행해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 체 사회복지계 차원에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교육인증안 개발을 위한 지 속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증의 구체적 기준, 양식 및 절차, 관리방 안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인정기 관으로 지정되고 인증분과위원회 또는 별도의 인증센터가 인증업무를 맡게 되는 경 우 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2)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2002년도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했던 사회복지교육분야 평가방식과 타학문분야에서 시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자체보고와 서면심사, 방문평가 후 인정 기관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인쇄물이나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인증결과 가 공식적으로 알려지도록 하며, 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제도를 두며 인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적정한 주기로 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받도록 한 다.

3) 인증기준

사회복지교육분야의 인증내용은 크게 교육주체인 교육기관과 교육자, 피교육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세부 분야로는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교과내용, 교육환경 등의 분야와 교육자인 교수진, 피교육자인 학생 등 5개 분야로 분류하며, 교과내용은 사회복지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과정과 실습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개선노력 및 성과, 평가체계와 관련한 기준은 각 분야에 포함시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각 분야별로 인증기준 설정시 고려해야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

미국은 일반주의 실천가를 양성하는 과정과 전문실천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분리하여 학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명시적인 교육목표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별화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과정은 학부와 대학원간의 교과과정상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는 정책과 실천을 포괄하며 이론학습과 실무실습을 병행하는 포괄적인 교육목표를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가 응용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부교육에서 추구하는 사회과학을 비롯한 기초학문분야의 지식이나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유능한 전문인력양성에 보다 가까운 교육목표를 세우고 사회복지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학부의 교육목표를 집중적인 전문대학원 수준의 교육을통해 얻을 수 있는 특정분야 들의 핵심적 유능성에 맞추고 일반적인 학부교육에서추구하는 기초학문분야와 사회복지의 기반적 지식의 습득보다 세분화된 전공과정에서 제공되는 실용과목을 중심으로 학부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각 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로 인해 단일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과정별 목표를 제시하고 차별화된 사회복지교육의 표준화된 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교육의 전체적인 방향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사회복지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교육이 대학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학부교육목표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은 고등교육에서 요구하는 기초교양과정의 지식과 더불어 응용학문에서 요구하는 전문교육의 지식과 기술을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부의 교과과정 구성이 교양 및 사회과학 교과목, 가치와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기초사회복지전공교과목, 대상별·분야별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됨에 따라, 특정 실천대상과 분야에서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specialist수준의 전문교육은 사실상 제공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학부와 대학원을 일반주의 실천가를 양성하는 과정과 전문실천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차별화된 교육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학부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일반주의 사회복지실무자 양성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육과 정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김기태 외, 2005). ① 사

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 정체성을 지닌다. ② 사회 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억압과 차별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 취약집단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한다. ③ 개인 및 그 개인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 이해의 수준을 높인다. ④ 개인, 가족, 집단, 조직체,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한다. ⑤ 이상의 내용들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특히, 강조되어야할 것은 일반주의 교육의 실천성은 사회정의나 인권과 같은 가치기반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통합적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전문성을 넘어 다양한 사회과학적 지식과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 이념, 정책 및 제도등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통합적 교육목표를 강조하는 것이다.

(2) 교과내용

① 교과과정

사회복지교육내용을 체계화하고 인증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과 그 결과물인 교과과정이다. 그러나, 학 문의 외적 경계가 모호하며 학문의 내적 일관성이 적은 사회복지학문의 내재적 특 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지식기반과 이론체계를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해나가는 방식의 합의는 쉽지 않다. 교과과정을 표준화하는 첫 단계로서 교육목표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과정별 특성에 따른 교과과정의 구성 틀을 제안할 수 있다. 조흥식(2003) 은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은 연계성과 공통성을 갖되 교육목표나 현장실습과 관련 해서는 내용의 구분과 수준의 차이가 필요하다고 한다. 학부에서는 교양교육 및 일 반실천(general practice) 중심으로 하고 대학원에서는 전문실천(advanced practice)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며, 특히 대학원에서는 실무분야별(가족복지, 의료세팅, 지역개발 등), 표적집단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문제별(빈곤, 범죄, 학대 등)로 폭 넓게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특수분야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즉, 4년 제 학부에서는 사회과학의 기초지식을 강화하고,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교육, 실습교 육 및 직접실천방법론을 강화한 교육 틀을 기초로 인증안을 구성하고, 대학원의 경 우는 학부과정의 교과과정에 비해 좀 더 분화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트렉개 념의 교과과정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비전공자에 대한 선수과목을 규정하는 운영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교수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제 학부와 일반대학원과정이 논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과

같이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진을 갖지 못하여 각 교수가 많은 분야의 교과목을 담당해야하는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현실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대상별, 문제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교과과정 운영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기때문에 교수진을 비롯한 사회복지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혼합되어있어 더욱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 비전공자의 경우는 사회과학과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경험이 많아 세부전공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따라서나, 비전공자는 학부에서습득해야하는 사회복지의 기반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보충적 장치를 통해 specialist교육과정 내에서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시각이나 정체성을 공유하도록 교과과정 구성시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문인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체계적인 학문적 틀 내에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지식의 범위에 따른 단계와 세부 영역에 대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가능한 사회복지인증 교과과정의 구성은 기초교과목과 전문교과목으로 크게 구분하고, 전문교과목은 현행 사회복지사자격시험에서 구분하고 있는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분류하되 교과목이 갖는 학문적 범주에 따라 재분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학문분야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공학점을 상향하고 교과과정을 엄격히 관리함에 따라,학부류 위해 필전공이수학점도 교육의 충분성을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

a. 기초교과목: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상호연관성과 상황적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과학의 한 학문분야이다. 사회복지가 갖는 사회적 맥락의 이해를 돕는 교육내용을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기초교과목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학문의 일차적 지식의 범주에는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인근 사회과학이 포함된다.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Th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a,b)는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과내용으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예술, 철학 등의 기초교양(liberal arts)과목까지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은 사회복지의 기초지식으로서 사회문제의 이해를 도우며 사회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토대가 된다. 우리나라의 학부과정에서는 일반교양과목 이외에 전공입문을 위하 기초사회과학교과목의 수강을 요구하므로써 인문 및 사회과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과학기초교과목의 수강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특수대학원과정이나 교과목 이수기준만을

충족시킴으로써 사회복지사전문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만들어진 교육과정 등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를 갖춘 사회복지인의 배출이라는 목표가 사실 상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b. 전문교과목

- 필수교과목: 학부의 제한된 교과과정에서 사회복지이슈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주요실천 교과목의 학점을 더 할당하거나 새로운 선택교과과정 개설을 통해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필수교과목군에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미시·중범위·거시의 모든 수준별 체계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인권, 사회정의, 사회복지윤리 등의 가치를 내재화시키며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의 이념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 선택(심화)교과목: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과목에 포함되어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 교과목이외에도 원조과정에 필요한 의사소통 및 면접론, 관계론, 상담기술 등에 대한 에 한 내용습 득을 위해 심화과정의 선택교과목에서 현장기반의 실천기술과목을 교육한다. 그러 나, 사회복지실천의 개입에 필요한 분절적인 지식의 유용성과 기술의 전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의 본질적 기능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의미 있 는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기르는데 한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기술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도록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다양하게 분화되 어가는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부 영역별 심화교과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 세부전공을 운영하는 경우나 대학원교육과정의 심화교육과의 관련필 요한 의사는 경우에 달리 구성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분야론의 교과 목과 필수교과목의 심화교과목 등이 선택과목에 포함된다. 최근, 세계화의 변화 속 에서 사회복지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로벌 사회복지'와 같은 교과목 이나 문화적 다양성 및 고유성의 인식과 변화를 위한 '다문화사회복지'와 같은 새로 운 교과목 들이 새로운 실천분야의 내용으로서 선택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

② 실습교육

타학문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사회복지분야의 인증교과과정에서는 실습교육의 강조를 통해 타전공과 차별화되는 사회복지고유의 실천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다른 사회복지교육분야에 비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온 실습인증안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실용적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 속에서실습기관, 실습수퍼바이저, 실습지도교수 등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습인증과 관련한 내용은 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 실습교육 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나가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학부수준에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사들 이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현장에 진출하여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전 문주의 교육에 대비되는 일반주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용적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천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적 내용을 통합하는 경험을 과정 중 에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학부과정 내에서 이루어 지는 최소한의 실습시간으로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 사회복 지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가치, 지식, 기술을 적절 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연구(김연옥·오정수·최혜경, 1997)에 따르면, 실무자 들은 교수들에 비해 사회복지교육이 이론에 치우쳐있다고 생각하며, 실천현장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태 등(2005)의 조사에서도 실무자들은 실천 교육내용의 폭과 깊이 및 실용성 등 의 조사 항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적절성에 대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기영·최명민(2006)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 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교육으로는 현장성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실습교육의 기준에는 현재 실습인증안에 제시되고 있는 기관실습처의 범위와 전문자격과 경험을 갖춘 실습수퍼바이저와 실습지도교수의 요건을 포함하도록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며 전문적인 실습교육기관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노력과 학교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습환경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실습전담교수를 확보하여 보다 적극적인 실습교육의 관리와 현장과의연계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습전담교수확보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하며, 실습지도교수가 담당하는 실습생의 수도 일반적인 강의의 분반기준인 60-80보다 낮은 1: 30-40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의 전공교육을 며 전학점기준이 줄

어드는 교육환경에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학부교육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안를 통한현재의 교과과정에서 실습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현장경험의 절대량을 확보하도록 필수 현장실습시간을 120시간에서 최소 240시간으로 상향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교육환경

교육기관의 행정 및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조직과 물리적인 시설과 교육설비, 학습 및 실습공간, 학습자료 등을 기본적인 교육여건조성에 필요한 물리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정하여 제시한다. 또한 사회복지교육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도 고려하도록 한다.

(4) 교수진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대학생 비율'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는 교육기관들이생존 및 경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데 급급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의 확충 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교육계와 교육부 등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67개 회원교의 교수 수는 최소 2명과 최대 16명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8). 또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교로 등록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공교수진이 더욱 부족할 것이라 예상되어10, 전문사회복지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학부제인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원격대학의 경우에 더욱 취약하다11).

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교가 되기 위한 기준중 교수요원과 관련한 사항은 전체 교원의 3분의 2 이상이 전체 학위과정 중 2개 이상의 사회복지전공학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교수요원에 대한 이와 같은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전공자에 의한 전공교과목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회원교가 된 교육기관이 67개교에 머무는점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교육의 상당수는 자격이 충

¹⁰⁾ 실제로 2006년 모 대학은 사회복지전공교수를 한 명도 두지 않고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학과의 부실운영 사례로 접수되기도 하였다(김범수 외, 2006).

¹¹⁾ 한 예로, 모 대학의 2005년도 1학기의 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1,093명으로 보고되어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김범수 외, 2006).

족되지 않는 교수요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집작할 수 있다. 교수대 학생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과정별 최소교수요원의 수를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기준을 반영하여, 학부를 기준으로 교수대 학생비율을 1:25 이하로 하며 최소교수요원의 수를 함께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적정인원의 학생 수를 초과하여 과목을 개설하거나 동일교과목에 대한 분반개설강좌수가 늘어나면서 강사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육인증기준에 회원교 가입기준에 제시된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이외에 사회복지전공교수대 학생비율 등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한다.

(5) 학생

학생이 과정을 통해 얻어야 할 능력과 지식의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학습목표를 반영한 학습성과를 구체화한다. 교육기관은 학생의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반영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등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전공적합성을 파악하고 자기계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학생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졸업예정자와 졸업생의 취업상담 및 취업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타 전공에 비해 전과생이나 복수・부전공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생선발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정책과 규정을 갖추도록 하며, 단일전공 이외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학업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지원체계와 여건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는 교과과정과 방만한 운영을 통해 적절한 교육의 질과 양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복지교육의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사회복지전문인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부내용을 검토하면서 체계적인 사회복지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도입을 제안하였다.

현재는 학부중심으로 이와 같은 인증제의 내용과 절차가 논의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기초정규과정으로서 운영되는 학부과정 이외에 고급단계의 학문적 탐구를 위한 일반대학원과정,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원과정, 관련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교육을 제공받는 특수대학원 등의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인증안들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학문적 지식습득이 목표인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전문대학원(MSW과정)은 전문실천가양성이라는 실용적목표를 가지고 폭넓은 다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동시에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정·개입·평가를 위한 훈련을 통해 특정 분야의 핵심적인 유능성을

중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학문적수준의 편차가 크며 교육여건이 상이한 문제로 사회복지교육과정구성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인증대상 교육기관의 가장 후순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사회복지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기준마련과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가 학부수준의 교육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교육 외에 현장의 변화와 욕구를 반영하는 보수교육과정이 학부교육과정과의 연계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기관의 공식적인 사회복지교과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전문보수교육과정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학부과정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현장의 욕구를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과정인증을 통해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현장기반의 보수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사보수교육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복지보수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사회복지교육체계와의 연속성을확보하면서 학부교육과 차별화되는 생애학습과정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보수교육안이 구성되어야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이 적정수준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며 전반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인증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에 도달하는 소수의 우수교육기관을 선별하는데 그치기보다는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갖추어나가려는 노력이 다수의 교육기관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교육분야의 인증에 관한 다양한 홍보노력을 통해 진학생들의 학교선택이나 졸업생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교육부의 예산지원이나 교육지원 사업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의 혜택을 가시화하고 비인증교는 인증기준을 갖추고자하는 내부적인 욕구를 강화해나갈 수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기태·양옥경·홍선미·박지영·최명민. 2005. "한국 사회복지실천교육모델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1): 19-68.

김범수·허준수·이기영·최명민. 200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교육> 2(2) : 1-38.

김연옥·오정수·최혜경. 1997. "우리나라 사회복지 학사과정의 교과과정의 분석".

<사회복지연구> 10:87-116.

남찬섭. 2005. "1960년대의 사회복지-4". <월간 복지동향> 2005년 12월호.

남찬섭. 2003. "사회복지정책 교육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2003년 4월호.

박태영, 이준상. 2004. "대학 사회복지교육이 실태와 개선방안". 2004년 한국사회복 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99-337.

이기영·최명민. 2006. "사회복지 전문인력 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2(1): 1-52.

이혜경·남찬섭. 2005. "한국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1(1) : 69-96.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http://www.jassw.jp/.

전재일. 2003. "사회복지학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토론문)".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조흥식. 2003. "사회복지 교과과정의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2003년 4월호.

윤현숙. 1997. "사회복지 교육의 발전 방향 : 실천현장 분석". <사회복지연구> 9 : 37-73.

한국경영교육인증원. 2007. 『경영학교육인증기준 및 예비심사 인증신청서 작성편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2009설명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8.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주소록』.

홍선미. 2009. 『전국사회복지교육실태 및 인증체계 개발조사』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홍선미. 1999. "임상사회사업의 발전과 과제". <사회복지연구> 제14호: 191-214.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a. Curriculum Policy Statement for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in Social Work Education. Alexandria, VA: CSW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b. Curriculum Policy Statement for Master's degree Programs in Social Work Education. Alexandria, VA: CSW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2008. http://www.cswe.org/CSWE/accreditation/.

Wolk, J. L. and Wertheimer, M. R. 1999. "Generalist practice vs. Case Management: An Accreditation Contradic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5: 101-113.

주제발표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이 기 영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총무

I. 제도 현황

1. 한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2. 사회복지사업법령중 관련조항

- □ 사회복지사업법제 11조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3. 자격제도의 발전 과정12)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한국전쟁 이후 자선사업가라고 불리우던 시기,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시기임.

¹²⁾ 표의 내용은 김범수,허준수,이기영,최명민(2006)의 한국사회복지교육 2권2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참조하였음.

- 2)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4):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
-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5~):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 제정. 1985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행.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시행 중임.
-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200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1999년 입학생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격관련 규정이 개정됨.

4. 법령개정 주요사항

구분	주요변경 사항
1998년	 국가시험 실시 (2003년부터)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자격등급 상향조정 (3급⇒2급) 실무경험기간 축소 (5년⇒3년)
2002년	○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교부 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2004년	○ 대학원의 경우,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국가시험과목 변경
2005년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8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 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이수학점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명시

5. 현행 사회복지사 급수별 자격제도규정의 요약

1) 사회복지사 1급: 아래의 응시자격자가 1급 시험에 합격한 경우

<표> 사회복지사 1급시험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1) 대학원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 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 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 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졸업예 정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 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양성교육과정수료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외국대학(원)졸업자	①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 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 취득해야 함

* '이수한자'의 범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등록을 필한자 또는「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자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2) 사회복지사 2급자격기준(요약13)): 교육과정이수

- 대학원(석사,박사) 사회복지 전공자, 4년제대학 사회복지전공자, 2년제 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 대학비전공 + 대학원 전공의 경우 : 지정된 과목이수 필수
- 대학비전공 + 지정된 과목이수
- 전문대학비전공 + 지정된 과목이수
- 대학 및 전문대학 동등인정학력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 지정된 과목이수
- 대학비전공(혹은 동등인정학력) + 12주 양성교육이수
- 3급소지후 3년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

3) 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양성과정 교육이수 14)

II. 자격제도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 2급자격자의 과잉공급문제

- 2009년 7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는 32만 3천명이고, 이중 2급소지자 72.0%, 1급 소지자 25%, 3급소지자 4% 순으로 집계됨.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현황 >

(단위: 천명)

구분	'85	'97	102	103	64	605	606	607	108	09.7.	비고
계	2.4	24	69	85	105	130	164	209	269	323	
1급	0.5	13	41	46	51	55	61	65	74	80	누계
2급	0.6	4	19	29	44	64	92	133	183	231	기준
3급	1.3	7	9	10	10	11	11	11	12	12	

※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 현황은 '09년 7월 현재 275천명

- 이러한 2급자격자의 급격한 양산은 사회복지관련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되는 현재의

¹³⁾ 본문의 내용은 법령상의 내용을 요약기술한 것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¹⁴⁾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법령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자격기준으로 인해 발생됨. 이러한 2급자격기준은 대학및 대학원, 그리고 전문대학의 모집정원을 크게 확대시켰고, 뿐만 아니라 원격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양성과정 등의 다양한 경로로서 2급자격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

- 이러한 2급 자격자의 공급이 단기간내에 필요에서 과잉으로 변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의 지속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일정한 교과목이수로 이루어지는 양산체 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교육과정 이수를 기반으로 하는 자격제도는 교사자격제도(1,2급)¹⁵⁾에서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해서 사범계학생 정원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향할 수 없음이 분명함.
-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전공자, 대학원및 특수대학원 전공자(대학비전공인 경우), 전문 대전공자, 대학 복수전공자, 평생교육원 학점이수자, 양성교육이수자 등이 모두 동일한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노동시장에 진출¹⁶⁾할 수 있으므로 정규 4년 제 대졸아상자와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음
- 그러므로 사회복지교육기관의 과잉배출을 통제하고 사회복지인력의 질적수준을 제고 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기본방향은 첫째, 사회복지노동시장(어떤 직무이 든 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자를 채용하는 사회복지관련기관의 경우를 말함)에는 사회복 지전공자로서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친자만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정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만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공급인력이 과잉된 시점에서 복수전공자나 비전공자의 자격부여는 더 이 상 장려해서는 안됨)으로 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간호사제도처럼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부여되는 것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함(노충래, 2008)¹⁷). 그러나 이전의 연구(노충래,2008)에서는 2급을

¹⁵⁾ 교사자격제도의 기본골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o 정교사 2급: 4년제 사범대학졸업자와 비사범계 졸업자(교직과목이수자, 성적 80%이상)으로서 교육과정이수를 기반으로 부여함.

o 정교사 1급: 2급자격자로서 3년이상의 경력과 일정연수를 받은자. 동일계 대학원 이수하고 1년이상의 경력자. 1급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의 경력을 인정함.

o 준교사: 전문대 졸업자임

^{16) 2006}년 강흥구교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응답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이 64.4%, 2급 34.4%, 3급 1.2% 순이었음.

폐지하고 1급만 유지하며 국가시험을 통하여 뽑는 방안을 언급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대졸자와 전문대졸업자의 시험응시자격을 구분하여 명시할 때, 전문대 졸업자의 경력을 요구하게 되고, 여전히 특정 자격없이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취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됨.

- 그러므로 국가시험제도로 사회복지사를 선발하여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되, 4년제 대졸이상과 2년제 전문대졸의 구분이 이루어져 자격시험 응시자의 교육적 투자와 비례하는 방식으로 시험자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형 평성에 충실할 것으로 보임.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아래와 같은 현황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과 노동공급의 조절이라는 1 급 자격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1) 사회복지사 1급시험 합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 최근 2008년과 2009년 시험결과를 보면 합격률이 30%-40%대임에도 실제 한해 합격자수는 7천-9천명대에 이르러 1급 시험합격자의 사회복지관련 취업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

구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1회(2003년)	5,190	3,487	67.2
2회(2004년)	7,233	4,543	62.8
3회(2005년)	8,653	3,731	43.2
4회(2006년)	12,151	5,056	41.6
5회(2007년)	16,166	4,006	24.8
6회(2008년)	19,493	9,034	46.3
7회(2009년)	22,753	7,081	31.1

<표 > 연도별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부여의 규모가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1급 시험제도의 인력공급조절과 전문성추구노력은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비 1급자격자 수는 과잉임.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2001년의 발표자료내용(강혜규·윤상용,2001)을 인용하면, 한해의 사회복지관련 신규일자리가 약 3000-5000명정도로 생겨나고 있음. 최근의 변화가능성과

¹⁷⁾ 노충래(2008), "사회복지사자격증, 미래는 있는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책토론회.

수요규모산정의 정확성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이정도 규모의 인력수요는 1급자격자의 숫자에 크게 못미치며, 더욱이 매년 1만명 이상에 달하는 신규졸업생(2급)의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임.18)

- 2) 현장에서의 1,2 급수의 업무구분이 불명확
- 사회복지사의 수가 증가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1급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실천현장에서는 급수에 따른 업무구분보다는 경력이나 의사결정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무가 배분되고 있어 국가 자격제도의 자격 1,2 급 구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현실임.
- 3) 1급 자격자의 양적, 질적조절이 요구됨
- 사회복지전공자 위주로 교육시스템을 조절하고 졸업생수를 감소시키면서 점차 1급 합격자의 숫자를 신규노동시장 수요를 감안한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야함
- 질적인 측면에서 1급 합격자의 직무영역을 보다 전문성있는 내용으로 상향조정하되다른 급수와 명확히 차별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3. 3급자격제도를 위한 양성과정은 현시점에서 불필요함

- 사회복지사 2급이 과잉되어 있는 시점에서 단기양성을 위한 사회복지교육과정은 현 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음.
- 복지부 내부적으로 양성과정의 수요감소 등으로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있으며, 양성교 육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아님.

다만, 국회 '07년부터 양성교육과정 국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 ※ 양성교육 실적도 '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 846명('05) → 608명('06) → 377명('07) → 410명('08)

^{18) 2007}년 6월 현재 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등록회원 16만명, 일본은 2007년까지 사회복지사를 83천명 배출했으며 매년 1 만명 배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9.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III. 개선방안

- 이상과 같이 고찰한 현행 사회복지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논의를 기반으로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현행 1,2,3급 제도를 아래와 같이 수정·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함

1. 3대 사회복지사 자격 시험제도의 정비: (가칭)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시험

-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은 현재의 1,2,3급을 폐지하고 3단계 국가공인자격시험에 의해서 부여되며, 응시자격은 전문대학이상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자로 국한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
- 1) 준사회복지사 시험: 사회복지전공 전문대졸 이상 교육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자격 국가시험. 전공인정을 위한 교과목 이수규정은 시험시행 시점의 사회복지사업법(혹은 사회복지사법(가칭))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사회복지사 시험(social worker):

- 사회복지전공 4년제 대학졸업 이상 교육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시험. 혹은 준사회복지사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경력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음. 전공인정을 위한 교과목 이수규정과 경력은 시험시행 시점의 사회복지사업법 (혹은 사회복지사법(가칭))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준사회복지사의 일정기간의 사회복지업무경력은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4년 제 대학졸업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요구됨.
- 단 1급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할 때, 대학과 전문대 출신의 직무내용과 보수체계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일반/특수)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석사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
 -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력산정 기준
- -사회복지사 시험 자격대상이 되는 시점: 보조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시점부터 시험일 전까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 될 경우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가능
 - 전문대학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후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전공으로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시험에 응시가능.

3) 전문사회복지사(professional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자격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실습수퍼바이저는 전문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음.19)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사회복지기관의 중간관리자이상 (과장, 부장, 사무국장, 관장 등)지위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 있음. 그러므로 전문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위상과가치를 높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함.

2. 3대 사회복지사 자격간의 경력연속성 논의

- 사회복지사자격과 전문사회복지사자격의 경력연속성은 대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나 준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와의 경력연속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시험시행방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수요하는 소요인력의 규모를 감안하는 시험합격자 수의 조절로서 인력공급조절기능을 할 수 있게 함. 준사회복지사의 시험과 사회복지사의 시 험은 그 직무영역에 기반한 소요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차별적인 시험내용과 난이도를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1) 준사회복지사

시험과목은 현행 사회복지사 1급시험의 과목에서 행정, 정책, 법제, 조사 과목등의 배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다 사회복지실천과 케어서비스관련 과목을 강화하거나 배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자격 시험과의 난이도 조정 및 출제과목의 조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¹⁹⁾ 보다 자세한 전문사회복지사의 자격규정은 이봉주교수의 발제내용을 참조. 기존의 우리나라의 전문사회복지사지격제도에서 는 자격취득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학사는 4년, 석사는 2년, 박사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 필요로 하고 있음. 이 번 토론회에서의 전문사회복지사제도에 관한 발제자(이봉주 교수)의 내용은 1,2 급 사회복지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서 본 저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현행 사회복지사 1급시험 과목과 배점

과목	영역		
사회복지기초(60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0점), 사회복지조사론(30점)		
사회복지실천(90점)	사회복지실천론(30점), 사회복지실천기술론(30점), 지역사회복지론(30점)		
사회복지정책과제도(90점)	사회복지정책론(30점), 사회복지행정론(30점), 사회복지법제론 (30점)		

- (2) 사회복지사 시험: 현행 사회복지사 1급시험 방식을 따른다.
- (3) 전문사회복지사 시험: 전문간호사 시험방식처럼 '기본응시자격(사회복지사 자격)' + 현시점에서의 일정이상 경력(예를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5년경력과 보수교육이수) + 시험(필기, 실기)의 조합으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 간호영역을 보면, 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 간호 과정을 이수한자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4. 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 표준 직무규정 제도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아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직무영역을 구분하여 사회복지 전문직화의 내적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구분은 사회복 지계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수정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급별 수행직 무 구분은 자격에 따른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될 것이며, 사회복지 업무 수행체계 확립 및 처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영역20)	주안점
	사회복지사 업무의 보조, 의뢰 이유 및 기본정보 파	클라이언트 생활지도 및
즈 기 원 보 키 기	악, 정보제공, 생활지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행	케어활동/ 사회복지사 업
준사회복지사	정문서 작성 및 관리, 시설안전관리 및 공동 물품관리	무보조/ 문서작성, 안전
	<u> </u>	관리, 물품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사정, 평가 및 종결, 사후관	프로그램 개발, 관리, 평
사회복지사	리,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준 사회복지사의 관리, 업무	가/ 지역사회관계/ 클라
	수행도 평가, 상담,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	이언트 상담
	영역별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퍼비젼제공과 실	전문프로그램개발평가/수
전문사회복지사	습생 지도책임, 지역사회욕구분석, 기관서비스의 장기	퍼비젼과 실습지도/ 분석
	적 기획 등	과 장기기획

5. 경과기간 및 과도기적 장치

-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법령이 실제 시행되기까지의 일정기간 경과기간(예를 들어, 3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법개정 후 경과기간동안 현행 제도를 (1,2급 유지, 3급의 축소 및 폐지)을 유지하되, 기존의 자격자들의 경과기간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함. 기존 1급자격자(1급 시험합격자)들은 신규 사회복지사 자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함. 기존 2급자격자들은 경과기간내에 1급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고, 경과기간 후에는 대학졸업자 이상과 전문대졸업자이하로 나누어 신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시험과 준사회복지사 시험에 응시할 수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자격제도 개선의 노력은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와 병행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법 령이 개정된 후 첫 신입생부터는 사회복지 복수전공을 금지하여 전공자만이 시험응시 자격을 얻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함. 복수전공금지는 사회복지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 공공사회복지영역에서의 자격, 즉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의 최소 자격은 민간부문 과 수준을 맞추어 준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해야 할 것임.

V. 제도개선방안 제안에 따른 법령개정방향

기 존 등 급	자 격 기 준	개 정 방 향	고 려 점
사회복지 사1 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로 개칭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부전공 불인정) 사회복 지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자 준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경력 2년 이상인 자는 사회복지사시험에 응 시할 수 있음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원(일반, 특수)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국가시 험에 합격한 자 	4년제 정규대 학교과정 이외 (평생/사회교육 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 평생교육의 패 러다임이 지배 하는 현시점에 서 이들의 진 입을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²⁰⁾ 위의 직무영역은 구분은 추가적으로 논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음. 표의 내용은 김범수,허준수,이기영,최명민(2006)의 한국 사회복지교육 2권2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참조하였음.

			교육기회는 열
			어두되,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
			로 변화
사회복지			
사2 급	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사'로 개칭 	로 사회복지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자격부여는 사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회복지교육과
	사업학을 전공하 또아니하고 동 석사		잉을 부채질함.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합격한 자	준사회복지사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		는 전문대졸업
	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사학실	- 기존의 바, 사 항은 폐지함(3급 자	
	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	격을 위한 사회복지사양성교육과	
	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	정 폐지방향성에 따름)	시험으로 제도
	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화함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		
	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		
	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		
	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		
	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		
	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		
	이 있다고 인영하는 사도서 모건복시 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		
	무용이 성하는 사외녹지의 신승교과 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기도그 오버에 이렇 대항의 조어한다.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		
	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		

	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 사3 급	있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 이수한자 라 및 지원 및 기관에 24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 이수한자 라. 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으로 3년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	사회복지사 3급수는 폐지함	사회복지인력 이 과잉인 시 점에서 이러한 부가적인 방안 은 현실적으로 불필요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 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 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 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좌동	

부록1: 외국의 자격제도 현황과 시사점

1) 일본의 사회복지사 제도21)

□ 일본의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복지에 관한 상담·원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 업무독점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명칭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는 국가자격임(엄기욱, 2007)²²).

-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제정되었고, 1989년 제1회 사회복지사 시험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현재까지약 8만 3천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음.
- 우리나라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험자격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열어두고 있는 반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며 등급은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점임.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경로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 격하여야 하나, 국가시험 수험자격은 얻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음.

- 첫 번째로는 4년제 사회복지 관련학과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12개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후 3년제 전문대학은 실무경력 1년 이상, 2년제 전문대학은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두 번째로는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 사찰지도원, 지적장애자복지사, 노인 복지지도주사 등으로서의 공무원 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 최근 후생노 동성이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실무 경험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대신 6개월간의 단기양성과정에서의 교육 이수 를 의무화하는 것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4년제 사회복지 관련 학과(또는 전문대학)에서 6개의 기초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한 후 실무경력 1년(전문대학은 2년)을 거쳐 6개원간의 단기양성시설에서의 교 육을 수료한 자.
-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 과정의 일반양성시설에서 교육을 수료한

²¹⁾ 강흥구(2008), '사회복지사의 전문화방안'에서 발췌

²²⁾ 엄기욱(2007), 일본의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

자. 그리고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1년간의 실무경험을 거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간의 실무경험을 거쳐, 기타 학력자는 4년간의 실무경험을 거친 후 1년 과정의 일반양성시설에서의 교육을 수료한 자.

○ 사회복지현장 실무경력과 양성기관 등은 노동후생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설과 사업의 종류가 지정되어 있으며,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직종도 지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다양한 학습과정(4년제, 3년제, 2년제 대학교육, 단기일반양성시설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하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으며 일정수준의 사회복지 지식 및 실천 수준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어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이 필요함. 사회복지사 합격률을 일정하게유지하는 것을 통해 시험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를예방하고 있음.

2)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23)

□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① 민간단체인 미국사회사업가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에서 규정하는 전국적인 수준의 자격과 ② 주 (州)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주별 자격으로 나누어짐.

○미국사회사업가협회(NASW)은 ① 3대의 credentials(자격과) ② 7개의 certificates(석사5개, 학사2개)로 나누어 자격증을 발급함.

○주(州) 단위의 자격제도는 주별로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는 하나의 전국단위기관인 미국주정부사회복지국연합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Social Work Boards, AASSWB)에서 운영함. 이 시험은 수준에 따라 학사, 석사, advanced, clinical의 4단계로 나누어 실시됨. 각 주에서는 주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규정에 따라 4단계수준의 자격시험을 모두 적용하거나 선별하여 적용할

²³⁾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p. 49~56

수 있음.

□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자격구분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 제공되는 자격증(credential)은 ① ACSW, ② DCSW, ③ QCSW 등 3가지로 구분됨

○ NASW에서는 분야별 인증서를 5가지로 구분하여 제공함. 즉, 석사학위소지자 (MSW)를 위한 전문분야 인증서(certificate)는 ① 의료사회복지 인증C-SWHC, ② 아동청소년가족 전문 인증 C-ACYFSW, ③ 알콜음주흡연 분야 인증 C-CATODSW, ④ 사례관리 전문 인증 C-ASWCM, ⑤ 학교사회복지 인증 C-SSWS. 포함. ③에서 ⑤까지는 여기서 기술하지 않았음.

○학사학위 소지자(BSW)를 위한 인증서는 ① 아동청소년가족 인증 C-CYFSW와 ② 사례관리 인증 C-SWCM 등 두 종류가 있음.

☐ ACSW

○회원자격: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교육경력 :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ouncil of Social Work Education, CSWE)가 인 증한 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실무경력 :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3000시간 동안 석사학위를 소지한 슈퍼바이 저의 지도감독 하에 쌓은 실무경력

○자격증 및 훈련 : 없음

○제출서류 : 직장 슈퍼바이저 평가서, 동료사회복지사 추천서, 사회복지사윤리 강령 및 보수교육에 대한 동의서, 2년 동안 20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 증명서, \$140의 신청비용○자격증 갱신 : 매년 회원갱신과 함께 자격증 갱신

□ DSCW

○회원자격: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교육경력 :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가 인증하는 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실무경력: 석사학위 취득 후 임상사회사업으로 5년간 직원으로 실무경력 5년 기간 중 첫 2년 동안은 최소한 2년간 임상사회사업 실무경력실무있는 임상 사회복지사의 지도감독 하에 실무, 나머지 3년 동안 혹은 4500시간은 기관경력 및 개업을 통한 독자적인 실무경력도 인정

- ○자격증 및 훈련 : 응시시점을 기중으로 지난 10년 이내에 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특히 최근 2년간의 실무경력과 주 단위의 고급수준 혹은 임상수준의 자격증
- ○제출서류 : 슈퍼바이저 평사서, 주 단위의 고급수준 혹은 임상수준의 자격 증명서, 전문가 추천서, 학교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윤리강령 및 보수교육에 대한 동의서
- ○자격시험 : DCSW 자격시험 통과
- ○자격증 갱신 : 매 2년마다 갱신 (2년에 \$280 지불)

☐ QCSW

- ○회원자격: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교육경력: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가 인증하는 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 ○실무경력: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3000시간 동안 임상사회사업에서 최소 2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임상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기관에서 실무
- ○자격증 및 훈련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ACSW 자격 혹은 주정부가 인정한 사회복 지학 석사학위 수준의 자격
- ○제출서류 : 수퍼비전 증명서, ACSW 자격 혹은 주 단위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수준의 자격,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윤리강령 및 보수교육에 대한 동의서
- ○자격시험 : 별도의 시험 없음
- ○자격증 갱신: 매 2년마다 갱신 (2년 동안의 회비 \$140)

□ C-SWHC (의료사회복지)

- ○회원자격: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교육경력 :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가 인증하는 대학원에서의 석사 학위
- ○실무경력: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3000시간(주당 약30시간씩 클라이언트를 면담)을 전임직원으로 일하면서 최소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아야 함. 단, 수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에는 면허증이 있는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나 심리학 박사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및 훈련 : ACSW 혹은 DCSW, 주정부 자격증, ASWB에서 중간(intermediate level)이상 수준의 합격증
- ○제출서류 : 대학원 석사 성적표, 수퍼비전 증명서, 수퍼바이저 및 동료의 추천서,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준수 동의서
- ○보수교육 : 년 20시간의 의료관련 보수교육
- ○자격증 갱신 및 회비 : 2년 동안 \$140

국내	ゝ)ス	·점
	· '	/ '	ľ

- 1급, 2급, 그리고 전문자격증에 따라 업무 분장의 명확화 업무분장의 명확화로 인 해 자격증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수퍼바이저의 자격과 수퍼비전의 개념적 명료화 수퍼바이저의 전문능력, 정기적인 수퍼빈전의 제공 및 감독을 통해 전문성 향상
- 자격제도의 운영주체 및 지침에 대한 법적 명시 미국의 경우 법적 통제는 주 당 국에서 권한을 갖고 있음.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문성 부분에 초점을 둔 민간자격증 임.
- 교육기관의 인증 및 보수 교육의 제도화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의 길을 보장하기 위해 주 정부에서는 해당지역 대학 및 대학원의 인허가 및 운영에 대해 감독. 미국의 CSWE(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각 대학 및 대학원을 인증하고 회원교로 등록하여 감독함.
- 회원관리의 엄격성 회비납부를 통해 자격 갱신, 주소 및 이름 등 개인정보의 변경 시 주 정부 및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
- 윤리 위원회의 설립 및 주기적인 심사 주정부는 web을 통해,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격월지를 통해 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회원을 공개하고 있음.

□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

- 자격관리의 주체 (정부/교육인적자원부, 별도의 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혹은 각 분야 협회)
- 자격세분화의 장 단점 비교
- 사회복지계 내외부의 전문성 및 분야 인정 가능성 및 적용성 보수교육의 시간 및 용이성
- 교육, 실습, 경력 인정 및 인증 문제의 주체, 심사위원, 심사기준 등
- 학사위주의 교육 대 석사중심의 교육에서 전문성 확보
-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 의한 2급 자격증 소지자 양산에 대한 대처

3) 독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24)

독일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university)에서 사회교육학(Social Pedagogy) 또는 교육사회학(Educational Sociology)을 전공하거나 응용과학 대학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서 사회사업(Sozial Arbeit)을 전공하는 방법 등이 있

²⁴⁾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08 태마기획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전국 사회복지 교육 실태 및 인증체계개발조사'한국 사회복지 교육협의회 (2009) p. 19-21

다. 이 교육이 제공되는 독일의 대학교육은 대부분 국립대학 체제이다. 1998년부터 독 일은 독일교육과학협회에서 교육전반에 대한 인증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여기에 사회복지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http://www.skkreditierungsrat.de). 즉, 이 인증제도는 모든 독일의 교육기관을 인증하 는 제도이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복지교육협의체(DGfE)에서 별도의 교육인증제도를 두 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에서만 사회복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서는 실질적인 교육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독일에서는 전통적 으로 국가에 의한 별도의 자격증 제도보다는 교육과정에 그 비중을 두어왔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각 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교육과 그 이후에 경험하는 1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새로운 학사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 학사과정은 8학기에서 7학기로, 12개월의 실습은 최소 3~6개월로 단축되었다. 단, 이는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문대학에 의 해 환영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론 교육과정의 상대적 확대 및 실습의 축소를 통해 일반 대학교육과정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사회복지사 협회(DBSH)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이유로 시험 이나 실무경험 등 국가에 의한 자격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인정이 순전히 형식적으로 이워지고, 그로 인해 불분명한 임의의 사회복지사상이 만들어진다면, 또한 전문가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아동을 보호, 예방, 양육, 지지, 지원해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실습과 진단, 방법, 상담능력 및 인성성숙이 요구된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다른 직종에서는 그 직업을 갖기위해 1년 반에 해당되는 실습을 의무화하면서 사회복지사에게는 100일의 실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DBSH: Deutscher Berufsverband fuer Soziale Arbeit 발간물중에서)

이러한 교육 기준에 관한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 목록들은 명확히 정리되어 일반에게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11월 현재 http://www.socialwork,de/와 같은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교 29개 교이고, 응용과학대항은 63개교로 나타나 있다. 이 교육 기관들은 전체 목록 중에서 각각 클릭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교육기관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포함하여 입학절차, 교육과정, 교수진, 전공내용

등 모든 정보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속하는 교육기관들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 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독일의 사회복지 교육기관 두 곳의 교육현황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제시하는 곳은 전문대학으로 학부교육 후 현장경험과 연계된 교육 및 가 격획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사회복지교육과정은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체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비교적 균등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국립대학체제에서 모든 요소를 따를 수는 없겠지만, 교육기관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서는 벤치마킹을 할 수있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된다. 그 중 하나가 사회복지교육기관을 한 번에 모으고 이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교육기관 검색 사이트이다. 우리도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이러한 사이트를 개발, 운영한다면,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에게는 각 교육기관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고, 교육기관들은 이를 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이용자가 각 교육기관의 교육목적, 교수진, 교육형태와 내용, 학생들의 현황 및 졸업생의 취업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가 탑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이트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이 목록에서 찾을 수 없거나 교육 여건이 부실한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자격미달의 교육기관은 정리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록 2. 현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1)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 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 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 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 상 사회 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시험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관련)

-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3) 합격기준

과목	영역
사회복지기초(60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0점), 사회복지조사론(30점)
사회복지실천(90점)	사회복지실천론(30점), 사회복지실천기술론(30점), 지역사회복지론(30점)
사회복지정책과제도(90점)	사회복지정책론(30점), 사회복지행정론(30점), 사회복지법제론(30점)

: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

O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 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⑪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⑤동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부록 3. 현행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1)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교)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 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 한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 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 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주제발표3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이 봉 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사회복지직의 전문화 논의에 있어서 교육인증제도와 현 국가자격증제도의 개선책과 더불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대표적인 논의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 방안이다. 사회복지계에서의 최근 논의의 방향은 대체로 사회복지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강흥구, 200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실제로 2007년에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실시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는 전문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응시자격, 시험방법, 경력인정, 수행직무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에서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국가자격증 제도 개선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 당국에서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실제로 이미 1996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이라는 제도가 시도되었다. 1998년에는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6개 분야별(아동 및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지역복지서비스, 의료사회사업, 노인복지, 공공복지)로 세분화되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전환됐다.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2004년까지 시행되어 총 591명의 자격증교부자를 배출하였다. 하지만, 2003년에 1급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의 차별성이 확연히 들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점 등의 이유로 2004년 이후로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왕에 만들어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문헌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몇 가지 이유는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전문사회 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시장(market)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격증 제도가 운용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인 업무의 영역과 수준이 규정되 고 또 일정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자격증의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규제된 시장 (regulated market)이 필요하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 격증에 따른 실천영역과 과업수준의 배타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굳이 자격증을 소지 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급이 필요 없게 된 다. 2004년까지 시행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는 '자격증'은 있었지만 자격증제도 가 정착될 수 있는 '시장'은 형성되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자격증제도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의 문제이다. 자격증 제도의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기 위한 시장 의 성립에는 비용이 든다. 자격증 심사와 교부, 자격증 관리, 자격증 제도 실행의 감독 등에 드는 비용 등을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2004년까지 실시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그 비용을 한국사회복자사협회가 부담하였으나, 비용 대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유지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이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자격제도를 존속할 필 요가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2003년 도입된 1급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제도 위에 더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가에 대한 사회복지계 내부의 공감대조차 상당히 미약했기 때문이다. 1급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막 출범한 시점에서는 1급 자격증이 실천현장에서 어떤 위상과 전문성을 인정받을지를 가 늠하기 힘들었고, 그런 이유로 1급 자격증보다 더욱 '전문화'된 자격증의 필요성을 가 늠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시도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가 정착하지 못한 이러한 이유들은 2009년 현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다시 논하 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논의의 틀이다.

(1)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유형

그 동안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활발하였지만,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유형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은 발견하기 힘들다. 그런 이유로 전문자격증 제도에 관한 논의가 때로는 전문분야(가령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분야별로)에따라 때로는 전문업무(가령 중간관리자, 슈퍼바이저 급의 업무로) 분장 이슈로, 혹은두 개념이 혼합되어 이루어져왔다. 이곳에서는 전문자격증 제도의 개념을 체계화하기위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유형을 횡적인 측면과 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살펴보고자 한다. 횡적인 측면은 실천영역의 세분화 문제이며 종적인 측면은 업무의중요도와 숙련도 문제이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체계

를 실천영역의 세분화라는 횡적측면의 고려와 업무의 중요도라는 종적측면의 고려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4가지 유형의 자격증 제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A 유형은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로 사회복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자격증이며 업무의 중요도를 구분하지 않는 일반(혹은 보통)업무 자격증이다.

B 유형은 업무의 중요도로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천영역의 배타성을 강조하는 영역별 전문자격증 제도이다. 가령 기존에 제안되었던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 학교, 자활, 공공분야 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는 B유형의 전문자격증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B유형의 전문자격증 체제가 성립하려면 각세부실천영역에서 근무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영역의 자격증 소지가 요구되어야한다. 또 각 세부영역이 다른 영역과는 실천측면에서 특수성과 이론체계를 갖고 있어야 B유형의 전문자격증 제도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아동청소년 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분야의 실천에 필요한 경력, 지식, 교육이 다른 분야와는 다르다는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근거가 필요하다.

표 1.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유형

		횡적구분		
		모든 분야	특정 분야	
종	일반 업무	A	В	
구분	중요 업무	С	D	

C 유형은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수행직무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실천영역에 관계없이 슈퍼비전, 지도, 평가 등에 전문성을 가져 기관에서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전문자격증을 필수화하는 등의 형식이다. 이러한 자격증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영역의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하고 전문사회복지사에게 부여하는 직무의 중요도와 전문성이 일반 사회복지업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D 유형은 B 유형과 C 유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실천영역의 세분화와 전문

성 인정과 더불어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 취득을 필수화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2007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연구보고서가 제시 즉, 는 방안은 영역별세분화(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노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 학교, 자활, 공공분야등 10개 영역)와 전문사회복지사의 직무분장(슈퍼비전, 지도, 기획, 평가 등)을 제시 즉, 어 아인, 여성노인, 지역사회(아제시 즉, 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2) 전문사회복지사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7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로 나타나 80%를 넘는 절대다수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이번 연구를 위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응답한 986명의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중 약 80%(필요함 50%, 매우 필요함 30%) 정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음	71	7.2
필요하지 않음	120	12.2
필요함	499	50.6
매우 필요함	296	30.0
합계	986	100.0

전문사회복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대체로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유형으로는 앞에 제시된 횡적 영역 구분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인정제도인 B유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야, 영역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경력자에게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약 50%가 찬성한 반면(매우 찬성 18.7%, 대체로 찬성 30.4%), 분야와 영역별로 일정 경력을 쌓은 사회복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에는 85% 이상이 찬성하고(매우찬성 43.5%, 대체로 찬성 42.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분야와 영역에 관계없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주는 방안과 분야와 영역별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주는 방안 중 택 1을 하도록 하였을 때 절대다수인 79%의 사회복지사들이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 3.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방안

구 분	빈도(명)	비율(%)
분야와 영역에 관계없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176	21.4
분야,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647	78.6
합계	823	100.0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방법에 있어서는 일정 경력이상인 경우 교육연수만을 통하는 방법, 일정 경력이상인 경우 국가시험을 통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연수과정과 국가시험을 병행하는 방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일정 경력이상인 경우 교육연수만을 통하는 방법에 약 75%(매우 찬성 28.9%, 대체로 찬성 46.6%), 일정 경력이상인 경우 국가시험을 통하는 방법에는 약 70%(매우 찬성 20.1%, 대체로 찬성 48.5%), 그리고 교육연수과정과 국가시험을 병행하는 방법에도 약 70%(매우 찬성 27.5%, 대체로 찬성 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3가지 방안에 대한 선호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연수만을 통하는 방법(39.4%)과 교육연수와 국가시험을 병행하는 방법(35.7%)보다는 국가시험만을 통하는 방법(24.9%)의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시험을 통하든 아니든 교육연수과정의 필요성에는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교육연수과정만을 통하는 방법	312	39.4
국가시험만을 통하는 방법	197	24.9
교육연수와 국가시험을 병행하는 방법	283	35.7
합계	792	100.0

전문사회복지사 취득에 필요한 경력기간은 대체로 3년에서 6년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41.4%가 3년~4년을 적정한 경력기간으로 제시했고, 35.4%가 5년~6년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고 있는데, 3년~4년이 46%로 가장 높았고 5년~6년이 12.1%로 3~6년을 제시한 비율이 약60% 정도에 달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2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25%에 달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력기간을 제시한 경우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표 5. 전문사회복지사 취득 경력 기간

구 분	빈도(명)	비율(%)
2년 이하	200	24.8
3 ~ 4년	372	46.0
5 ~ 6년	98	12.1
7년 이상	138	17.1
합계	808	100.0

(3)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고찰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는 도입될 필요가 있는가? 만약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다 면 어떤 유형의 자격제도가 바람직한가? 이곳에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 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전문사회복지사의 도입이 필 요한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인접 관련영역에서의 사 회복지직 전문성에 대한 공격이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복 지전달체계의 통합 논의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일반 사회복지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특 수 연령층의 개입에 필요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인접 관련분야 (즉 아동학, 청소년복지학 등)에서의 문제제기의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국가자격제도인 사회복 지사 제도가 공급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사 제도만으로는 전문가의 위 상을 견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문직의 위상 제고와 질 관리를 위해 서는 강화된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복지직의 전문화에 필요한 교육인증제 도입, 사회복지실습교육의 강화, 교육분야의 전문화 등에 전문직 제도의 도입이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그러한 자격증 제도에 걸맞은 교육체계, 인 력양성체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전문사 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바람직할 것인가? 우선 앞에서 살펴본 유형체계에서 중요업무 분장과 영역별 전문직을 동시에 추구하는 D 형은 현실적

으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은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안인 B 형과 업무분담 기준에 기초한 C형, 그리고 B 형과 C 형을 별개의 자격증 제도로 병행하는 방법이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단기적으로는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안인 B형의 도입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교육 체계의 개선안과 연관 지어생각해보아도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는 실천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B 형이 가장 설득력 있게 보인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영역별자격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에서 출발한다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영역별자격제도는 법적자격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그리고 임의 자격으로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자격제도를 전문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로 편입하고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성이높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도 영역별 제도임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C 형의 수행직무 수준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직무분장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직무분장에 대한 학계와 실천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직의 직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지지지 않고 있고 직무의 정형화 정도가 상당히 낮은현 시점에서는 수행직무 정도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기대할수 없다. 실제로 2008년에 조사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업무특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9,436명의 응답자 중 업무곤란도, 업무중요도, 업무책임도, 업무우선도 측면의 4개 업무특성 영역에서 모두 높은 강도의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대에(총 469명) 머물러 아직 일선현장에서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인식은 낮은 형편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두 번째로는 수행직무 수준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아진 업무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현실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호봉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보수수준은 공무원 보수수준과의 격차가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적절한 보상체계가 없는 가운데 도입되는 수행직무 수준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는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은 실천영역 분야별로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단기적으로으로으로고 향후 중장기 과제로으수행직무 수준에 따른 전 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병행해서으로으로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도 NASW에서 제공하는 수행직무 수준에 따른 SW에서 제xASW 에(credential) 제(ACSW, DCSW, QCSW)와 분야별 인증 제(의료사회복지, 아동청소년 가족, 알콜음주흡연, 사례관리, 학교사회복지)인 전문분야 인증선(certificate) 제도로 분리,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실천영역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고려할 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하는 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야의 구분과 각 영역별 세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10개의 영역(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 학교, 자활, 공공분야)(한국사회복지사 협회, 2007)은 너무 세부적인 구분인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종류의 분야별 세분화는 시설유형별 자격증 제도로고착되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자칫 사회복지시설 간의 인력교류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전략하게 할 수 있다. 분야의 구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분야 수를 5-6개 정도로 정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장애인-노인, 정신건강, 의료, 학교, 그리고 나머지 분야(지역사회, 자활, 공공분야)는 사례관리로 묶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 방법이다.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학력보다는 실천현장의 경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사회복지사 협의의 연구보고서(2007)는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경력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은 분야와 수행직무를 혼합한 D 형의 기준이기 때문에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경력기준으로는 과도하게 보인다. 이곳에서는 분야별로 2~3년 정도의 경력기준을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의 경력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자격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인 업무의 영역과 수준이 규정되고 또 일정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자격증의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규제된 시장(regulated market)이 필요하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격증에 따른 실천영역과 과업수준의 배타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굳이 자격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의 규제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명시한 'OO사회복지사'의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동일 분야 근무 경력이 2~3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영역별 교육, 수퍼비전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한다. 국가시험은 필기와 면접(구술)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임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방식을 택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업무수준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도입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과 더불어 추진하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는 진공 속에서 만들어 질 수 없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 슈퍼비전 체계, 보수체계 등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사회복지 인력수급의 개선방안과 같이 추진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강흥구(2008). 사회복지사의 전문화 방안. 정책연구세미나 결과보고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09).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7).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정토론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이성기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전국사회복지대학원장협의회 회장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격시험제도의 정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과 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현재 사회복지대학원이 갖고 있는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대학원은 주로 야간의 석사학위과정으로, 현직 사회복지사의 재교육과 함께 다른 전공의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사회복지사 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대학원은 야간에 강의를 개설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한과함께,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의 재교육과 함께 사회복지에 입문하는 비전공자를 함께 교육하여야 한다는 특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안과제인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5일 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① 2010학년도부터 대학원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의 학점을 과목당 3학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② 현장실습시간을 120시간 이상으로 하고, ③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조 참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학부나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사회복지대학원의 교과과정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과목당 3학점으로 변경할 경우, 전국 사회복지대학원의 졸업이수학점은 학부나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대부분 24-28학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시까지 8-9과목 만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는 교과목 개설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에 한 정되며, 여타 전문과목을 개설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복지대학원은 야간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후 7시 전후에 시작을 합니다. 3학점 체계로 변경되면 시간상 하루에 한과목 밖에 개설할 수 없으며,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등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셋째, 이러한 개정 내용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은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재학중인 2008학번 학생들은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거의 시행규칙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교과과정에 따라 입학을 하였고, 학업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이 개정내용을 시행할 경우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내용 중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전국사회복지대학원장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요구안>

o 개정요청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중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관련)-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현행 규정 : 대학원 이수과목 학점체계:(필수6과목이상+선택2과목이상)*3학점이상 으로 규정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개정요청안 : 대학원 이수과목 학점체계를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과목당 학점수 규정을 폐지하고, 총교과목수만/또는 총학점수만 규정. 시행일 폐지 또는 경과조치를 둒.

구분	현행(2008.11.5.개정)	개정요청안	비고
이수과목 (학점)	필수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1)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또는 (2)필수과목 6과목 이상 또는 18학점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	(1)은 개정이전 종전규정과 동일함
*학점수 규정 과목당 3학점 이상		과목당 학점수 규정 폐지	
*시행시기	2010년 1월 1일	폐지 또는 경과조치 필요	

o 개정요청 이유:

2008년 11월 5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된 대학원 이수과목의 학점체계 변경은 대학원 학제의 특성과 개별 대학원이 지니고 있는 욕구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예: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와비소지자의 혼합교육, 야간수업 등).

- 특수(야간)대학원의 경우, 과목당 3학점=3시간의 수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파행적인 학사운영 이 될 소지가 있음.
- 학점수를 과목당 3학점으로 확정 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만을 수 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본래의 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학부 비전공자의 경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필요함.
- 대학원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별로 전문적 특성을 살려 학사 운영할 여지가 없어짐.
- 따라서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2학점 체계와 3학점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득이 시행할 경우, 현행 규칙개정 이전에 입학한 2009학번 재학생의 졸업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함.

지정토론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문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1. 기로에 선 한국의 사회복지사 제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제도적인 면에서 양·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와 발맞추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이러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전문성의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제도의 단순한 이행자 내지는 전달자로서의 기능수행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된다. 물론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부터는 국가자격증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 일반의 인식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현장훈련을 통해서 적응해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치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제정된 건강가정지원법이나 최근에논의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합법(안)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뚜렷한 역할규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사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는 현재 한국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차원에서의 괴리로 파악하고 있다.

-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
- 사회복지교육과 사회복지 현장의 괴리
- 자격증 제도와 직무표준화의 괴리

- 자격증 시험제도와 현장 실무능력의 괴리
- 이론(기술)의 발전과 표준교과목 제도의 괴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괴리가 한 번의 개혁으로 일거에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첫 걸음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기본적으로 이기영 교수와 이봉주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동의를 하고 있지 만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준사회복지사 시험제도

이기영 교수는 준사회복지사 시험과목은 "현행 사회복지사 1급시험의 과목에서 행정, 정책, 법제, 조사 과목등의 배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다 사회복지실천과 케어 서비스관련 과목을 강화하거나 배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교과목을 적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험과 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준사회복지사 시험과목(안)

과목	영역
사회복지기초(60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0점),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30점)
사회복지실천(60점)	지역사회복지론(30점), 사례관리론(30점)
사회복지정책과제도(30점)	사회복지행정론(30점)

2.2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필요한가?

이봉주 교수는 2004년 이후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즉 전문사회복지사를 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비용의 문제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현재에도 이봉주 교수가 적시한 세 가지 상황은 별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2007년 조사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당사자 설문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의사결정의 근거는 될 수없다. 만약 같은 설문조사를 2004년에 했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서 응답하는 것과 실제 자신이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사용해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결심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4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중간지대(not certain)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반수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 (professional)'을 대놓고 필요 없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3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바람직한가?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보다는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신에 분야와 영역에 상관이 없는 사회복지 전문가, 즉 사회복지의 전 영역에서 심화된 전문성으로 무장한 사회복지사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제도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지향과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는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통합되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영역별 전문 사회복지사로 칸막이를 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신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가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3. 토론을 마치면서

사회복지사 제도의 개혁과정, 즉 문제의식의 제기, 문제점의 파악과 진단, 대안의 모색과 의사결정, 그리고 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혹은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장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현장 사회복지사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항상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해결책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지정토론3

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 유지의 필요성

고명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1. 서론

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국립종사자훈련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교육을 담당한 후, 2003년부터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제도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교육의 기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어다음과 같이양성교육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현재 사회복지사자격증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14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발급되고있다. 그러나 위 자격증 취득자는 연 1만명~1만 2천여명 정도로 이중 매년 약 27 ~ 30% 정도의 자격증 소지자만이 사회복지실천현장1)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인운영시설과 생활시설 등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의취업 희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는 개인운영시설 및 생활시설의 보수 조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들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개인운영시설 및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8시간 노동시간과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단결권 행사 등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실에서 종교적 신앙심이나 이타성에 근거한 개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개인 생활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중 무자격자

¹⁾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취업률,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7).

가 상당수에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2)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시설을 운영 또는 종사하고 있는 미 자격증 종사자들에게 양성교육제도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양성과정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키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조건부신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한 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제주지역만을 예시하여보면 개인시설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 중 80%인 2,215명3이 사회복지사자격증 미소지자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 위 권역 내 '사회복지사양성과정' 교육인원은 1년에 약 300여명에 한정되고 있어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1>.

넷째, 양성교육과정의 교육 희망자들은 종교적 신앙심이나 이타성에 근거한 동기를 갖추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간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엄격하게 선발,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이론적으로 습득시키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적정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성교육제도는 한시적4)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표1-1>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수료생 현황(2003년 ~ 2009년)

년도 / 과정	6주	12주	24주	
2003년	-	80명	77명	
2004년	71명	140명	139명	
2005년	79명	138명	171명	
2006년	50명	120명	156명	
2007년	76명	119명	117명	
2008년	109명	119명	102명	
2009년 ⁵⁾	76명	91명	93명	
계	461명	807명	855명	
총 계	2123명 (공무원 : 461명, 재직자 : 1662명)			

²⁾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권상황실태조사'(2005),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연구.(2007).

^{3) 2002}년 조사결과는 정확한 통계로 볼 수 없음. 전국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로서 담당공무원들의 수요조사가 매우 형식적임. 이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양성과정교육 희 망자 수요조사를 의뢰하여 취합한 조사결과와 실제 교육 응시인원에 상담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음.('09년 보복부 수요조사결과 12주 60명(실제 교육 응시자는 120명 중 최종합격자 93명), 24주 50명(실제 교육 응시자는 110명 중 최종합격자 93명)이나 실제 교

육 응시자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위 근거는 명지대학교 기준임).

⁴⁾ 위 표 <1-1>과 같이 매년 교육 희망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2012년이면 희망자에 대한 교육 수요가 완료 될것으로 사료됨.

^{5) 2009}년은 수료예정자 포함.

* 명지대학교 수료생 기준임. 2007년 대구보건대학교, 광주대학교, 공주영상정보대학은 교육이 중단되었음. 현재는 명지대학교(6주,12주,24주과정 운영)와 부산 경남정보대학(6주,12주과정 각 20명교육)에서 운영하고 있음.

<표1-2> 양성과정 수료생 연령별 현황

연령대	인 원
70대 이상	19명
60대	109명
50대	697명
40대	745명
30대	437명
20대	116명

<표1-3> 양성과정 수료생 제직기관 및 시설현황

구 분	인 원
법인소속	177명
개인운영시설	1443명
기타	42명

2. 본 론

1) 양성교육제도 폐지는 글로벌 시대의 역행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자 등 일자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사양성교육과정이 폐지되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다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일자리 창출과 선의적인 경쟁을 통한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 시켜나가야 하는 '능동적 복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양성교육제도는 헌법 제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념에 부합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의 교 육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법률적 근거에 의해 대학 등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복지실천현장 경력자에게 양성교육과정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 침해, 평등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사회권적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특히 정규과정 외 별도의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 그룹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표1-5>.

<표1-5> 정규과정 외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제도

구 분	정규과정	별도과정	교육 후 진로
초, 중, 고등교육	초,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보육교사	대학, 대학교	보육교사양성과정	보육교사 자격증
군(육,해,공군) 장교	사관학교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군 장교 임용
경찰관 (간부)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경찰 간부 임용(경위)

* 중학교의무교육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정고시제도를 유지 학업의 기회를 놓친 국민들에게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취득을 보장하고 있음. 2)전국의 모든 대학 등에 아동학과가 개설되어 매년 수많은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기관」은 전국에 수 백여개 운영,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 장교도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수 많은 장교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등 다른 제도를 통하여 장교를 배출하고 있고, 경찰대학에서는 초급간부를 매년 수 백명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후보생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초급간부를 양성하고 있음.

2) 양성교육제도 폐지 논리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

양성교육과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논리는 첫째, 사회복지사자격의 과잉공급과 둘째, 교육수준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지 주장의 논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기성에 근거한 흑백논리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성교육과정의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6주(공무원), 12·24주(재직자)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교육기간만을 기준으로 교육제도 폐지의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과정은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업무 3년이상 경력자', 재직자 12주 과정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자로서 1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 경력자, 24주 과정은 고졸학력자는 1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 경력자, 고졸 미만의 학력자는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의 경력기준을 갖춘 자로, 동 교육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시험(사회복지개론, 면접, 서류전형)을 엄격히 치르고 합격한 자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둘째, 양성교육과정 6주·12주·24주 교육기간을 주 단위로 판단하여 교육수준의 담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2년제·4년 제 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의 교육기간의 실제 이론수업 및 현장실습시수는 양성과정 교육생들이 이수하는 시수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표2-1>또한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발성 존중의 원리, 기회균등, 사회연대감의 증진 등 전문성에서도 학부 졸업생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볼 수 있다.

<표 2-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교과목 교육 이수시간

구분	교육기간	이수 교과목	이론수업 시간	현장 실습 시간	현장실무 경력시간	총 교육 이수시간
대학교, 대학, 학점은행제 등	4년, 2년 1년	사회복지개론 등 13과목	585시간	120시간	0 시간	705 시간
공무원 과정	6주(210시간)	위와 같음	170시간	40시간	6,264 시간	6,474 시간
재직자 과정 (전문학사이상학위자)	12주(420시간)	위와 같음	340시간	80시간	2,088 시간	2,508 시간
재직자 과정(고졸학력자)	24주(840시간)	위와 같음	680시간	160시간	2,088 시간	2,928 시간
재직자 과정(고졸미만학력자)	24주(840시간)	위와 같음	680시간	160시간	6,264 시간	7,104 시간

* 대학교, 대학의 시수는 13교과목을 3학점 15주 수업기준으로 환산, 실습시수 포함한 시간임. 양성과정 6주, 12주, 24주 현장실무 경력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환산한 시간임.

셋째, 양성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교·강사진은 이론 및 실기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보건복 지가족부의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수준 높은 질적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한 전문가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의 질은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고 판단 한다<표2-2>.

<표2-2> 사회복지사양성과정 교·강사진(2009. 2학기 기준)

구 분	학위	현장경력	비고
주임교수	박사(사회복지정책전공)	현)복지관장	문학박사
지도교수	박사(사회복지실천정공)	현)노인요양시설부원장 대학 겸임교수	문학박사
전담강사	박사(법학전공)	현)복지학회 이사	법학박사
전담강사	박사(사회복지행정전공)	현)상담소장	행정학박사
전담강사	박사(사회복지실천정공)	현)복지관팀장	문학박사
전담강사	석사(사회복지행정전공)	전)복지행정경력25년	박사수료
전담강사	석사(노인복지전공)	현)복지관련협회 과장	박사수료
시간강사	박사(행정학전공)	현)시 의원	행정학박사
시간강사	석사(상담심리전공)	현)노인요양센터장	사회복지학석사
시간강사	석사(아동복지전공)	현)아동시설장	사회복지학석사
시간강사	석사(행정학전공)	현)노인요양시설장	행정학석사
시간강사	석사(사회복지실천전공)	전)복지행정경력17년	사회복지학석사
시간강사	석사(노인복지전공)	현)노인요양시설장	사회복지학석사
시간강사	석사(노인복지전공)	현)복지행정팀장	사회복지학석사

^{*} 명지대학교 기준임.

3) 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의 효과성

(1) 공무원과정

공무원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는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절대 부족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적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일반사 회복지사와의 법적관계의 유연성과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 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의 행정 편의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인 '능동적 복 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사회복지행정서비스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재직자 양성교육

재직자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는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 실 천 현장에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전문대학·대학원 등에서 학업 후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한 자들은 업무환경이나 이에 걸 맞는 보수만을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재직자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는 이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과 여기에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 후 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직자과정 수료생들은 전문적인 자질을 인정받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과 민관 협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결론

2006년 참여정부 시 복지관련 학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양성교육과정에 대한 폐지 의견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일부 사회복지 기득권 세력에서 주장되고 있으나이러한 주장은 전근대적인 사고와 집단적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양성교육 폐지론자들의 의견 중 사회복지사자격의 전문성과 과잉공급을 이유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성이 없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양성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자는 연 300여명에 불과 매년 대학 등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12,000여명(2007년 기준)에 비하면 <표1-1>에서 제시하였듯이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과잉공급의 지적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자격증 과잉공급의 문제 제기는 양성교육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2~3년간 난립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지방대학의 학습관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사자격증 남발 등이 과잉공급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사회복지사양성과 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위 양성과정 폐지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사회복지사양성교육 폐지 주장보다는 사회복지사자격증 불법취득사례와 휴머니 즉 서비스에 맞지 않는 사이버대학 등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사양성교육 수료생들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발전에 끼친지대한 영향을 간과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있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지방대학의 학습관 교육 등을 통한 대리학습, 편법학습에 의한 자격증 남발 사례에 대하여복지학회, 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양성교육제도에 대한 페지 주장보다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의 개선 및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회복지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사자격제도 개선방안 중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급수를 폐지하고 사회 복지사자격증 취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자는 거시적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미시적 접근방법에서 4년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들에게 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자는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처럼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들에게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제도를 6주과정은 12주, 12주과정은 6개월, 24주과정(고졸미만의 학력자는 폐지)은 1년으로 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이 헌법 및 사회복지법의 기본적 이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이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국정목표에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본다.

<참고자료>

- 1. 헌법(2009). 법제처
- 2. 사회복지사업법(2009).법제처
- 3. '09년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운영계획(2009). 보건복지가족부

지정토론4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방안

박용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실장

1. 들어가며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으로 사회복지전문직의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한 이후, 2003년부터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노동공급 조절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한지 25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자격제도를 도입한지 7년이 지났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노동공급 조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많이 있었지만, 항상 토론으로 끝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뜻을 모아 주관하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하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교육기관인증제'와 '사회복지실습기관인증제'의 도입을 적극 찬성하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간관계상 본 토론자는 현행 자격제도에 한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 의견

가. 무시험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발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직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자격취득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유지 기준이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은 반드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서 합격자에 한하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간을 12~24주로 지나치게 단기화하고 있어 타전문직으로부터 국가자격제도 및 전문자격제도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임.
- 3급 자격 취득자의 경우 비전공자, 저학력자가 많아 사회복지사 자격을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으며, 1-2급 자격취득자와 형평성 시비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음.
- 특히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 6주 이상 교육 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특혜 소지가 있음.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규 자격 취 득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여야 함.
- 특수대학원의 경우 교수진이 비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습교육이 취약하여 졸업과 동시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반적 질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높음.
- 따라서 사회복지학전공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에는 시험을 응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 국가가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중단되 어야 함. 이러한 논리라면 법학과를 졸업하면 무시험으로 '변호사 2급' 국가자격증 을 주어야 할 것임.
- 무시험 자격증 발급은 과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적 조처로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나. 현행의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을 '사회복지사'로 통합하여야 한다.

- 전문직종의 특징으로서 국가자격의 지향성과 자격의 권위에 합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3급은 폐지하고 '사회복지사'(1급) 하나로 통합되어야 함.
- 한시적으로 2급을 유지해야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2급의 경우에도 1급과 같이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자격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기존 발급된 2-3급의 경우 전환 유예기간 공지, 현장근무경력, 승급보수교육이수 등의 합당한 기준을 통하여 통합이 가능할 것 임.
- 통합 시 응시자격에 대하여 사회복지학 전공자 중 4년제 대학교 및 일반대학원은 졸업과 동시에 응시자격부여, 전문대학 및 특수대학원은 현장근무경력 2년 후에 응시자격부여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이수과목 및 시험과목은 조속히 개편되어야 한다.

-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수과목의 학점을 3학점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수과목을 대학원은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 대학교·전문대학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으로 과거와 같이 지정하고 있음.

- 이수과목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원은 필수 10과목 선택 2과목, 대학교·전문대학은 필수 10과목과 선택 8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교육과정의 강화는 곧 질적 수준향상을 가져오며, 사회복지학과 가 아닌 다른 분야의 학과에서 편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음.
- 사회복지는 '현장의 학문'이라는 말이 있음. 학교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모여서 이수교과목과 시험과목에 대한 개편 작업을 단행해야 할 것 임.

시험과목 중 '사회복지실천론'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중복성이 있고 경계구분이 모호함. 또한 '사례관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은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바, 조속히 이수과목 및 시험과목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됨.

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은 찬성하되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 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분야별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문사회복 지사 자격제도를 섣불리 도입하였다가는 사회복지사들간의 이해관계 대립 및 내부 영역간의 갈등으로 야기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시행하기 전에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전문영역의 구분, 영역별 직무범위, 기능과 역할, 영역간의 인력교류, 전문자격자에 대한 예우, 동일기관내의 직무 위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한국사회복지사평가원 설립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한국간호사평가원을 2004년 2월 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설립되었음. 이 기구는 간호교육과 현장에서의 간호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을 전담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간호사 시험 준비 및 시행, 간호대학인정평가, 간호사국가시험 개선, 간호사 면허제도 개선, 저작권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 기관은 간호학과 간호직 분야의 전문직 자율규제 기구 (self-regulatory body)로서, 향후 전문직 내외부로부터의 전문화요구에 대한 적극적대응으로 보임. 이는 1962년 간호사 국가시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42년에 이룬 결실

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관리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됨.

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갱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간호 인력의 활용목적으로 자격증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과거 최초 면허 부여 후 면허 유지를 위한 부가적인 의무가 없어 해당 면허의 질적 유지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자격소지 인력의 추이 및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실정에 있었음.
- 특히 최근 면허간호사는 20여만 명에 달하고,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9만 여명으로 집계되어 유휴인력이 상당수이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있음. 이는 현재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자 인력관리 실정 및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간호계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에 대한 재등록 등의 면허관리를 통해 어느 시점에서나 면허자에 대한 질적인 보장을 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도입하여, 간호사 자격증의 면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간호사면허제도 면허유효기간은 5년이며, 면허유지 조건은 보수교육이수(현업종사자와 재취업자의 프로그램 차별화)로서 현업종사자 및 5년 이내 재취업자의 경우, 연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5년 이상 휴직자 재취업 시에는 연 15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이와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갱신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지역별, 연령별 파악, 취업 현황 파악, 해외 이주자 및 사망자 파악 등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증 발급자 중 활동가능한 유효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한 통계 를 기초로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의 수급·공급조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파악된 유휴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지정토론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

조현순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장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03년 실시된 제1회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에게 기대하는 역할혼란, 즉 **정체성**에 대한 것과 둘째,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길러 낼 것인가 하는 교육제도에 관한 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된다.

오늘의 이 공청회를 통해 그간의 혼란을 해결해 내기위한 활발한 논의들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 혹여 일각에서는 사회복지계를 이익집단으로 보고 사회복지사의 이러한 논의를 이익집단간에 자신들의 영역고수를 위한 편협한 논의로 치부하거나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들의 이러한 논의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단순한 자원봉사와 직접 서비스의 전달 수준을 넘어서서 전문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가 각각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역량이 강화되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복지전문가로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정 없이 쏟아부어도 부족한 복지자원을 절감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최일선의 전달체계에 종사하는 인력문제이므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국가적 해결과제로 보아 마땅하다.

세분의 발제자께서는 사회복지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히 제시하여 주었다. 특히 교육기관 인증제, 준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구분,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실시방안을 제시하 셨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보완 내지 강조 되길 바라 는 몇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1,2,3급의 폐지/ 사회복지사 와 전문복지사실시 / 생활복지사 제도 도입요 망"/관련법의 일관성 유지

현장에서는 1,2,3급 유무 보다는 출신학교가 4년제인지 2년제인지 사이버나 양성과 정인지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국가시험으로 선발되는 1급 사회 복지사와 그렇지 않은 2.3급 복지사의 차별성을 현장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 자격시험이 존재하는 한 시험의 합격여부는 자격행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3급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 합격자만이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는 국가 고시로 한단계 강화한다. 연간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로서는 자격시험만으로 교육현장의 질을 통제할 수 없으며, 자격시험만으로 실무능력을 판단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들의 취업수요와의 불일치현상이 일어나거나 역할의 전문성 미확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하향조정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통로를 다양히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선발 통로를 일원화 하고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직무분석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와 생활복지사의 분리를 통한 사회복지사 업무를 명확화한다.

경험상 4년제 대학출신의 사회복지사를 원할 경우 이들에게 제너럴리스트로서 개인 대상 실천, 가족 및 집단 대상 실천은 물론 지역사회대상의 거시적 실천 능력을 고루 갖추고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개입을 위한 사정 및 다양한 개입행위구사, 연계, 협력, 동맹 관계의 조직,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킹, 사례관리, 인사관리 등 조직행정 및 경영능력을 기대한다. 이들을 우리는 사회복지사라고 칭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년제의 경우 아동의 보육지도, 재가어르신케어, 어르신 주간보호, 무료급식등 직접서비스전달 및 관리 , 돌봄과 수발을 위한 생활지도 업무, 시설 관리 업무, 가정방문 및 생활서비스 제공능력을 기대한다. 이에 전문대학 교과과정을 보다 직접서비스 중심의 교과 내용으로 보완하여 양성하여야하고 이들은 사회복지사와 구분하여 생활복지사(가칭))로 구분하여 별도의 자격을 전문화 하여야 한다. 발제자께서도 이를 위해 준사회복지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본인의 견해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준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하고 각기 연차가

될수록 전문화 되어야 하는 업무의 고유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준사회복지사의 경력이 오래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조심스레 재고되어야 한다. 준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더 이수 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이다.

전문가 집단의 업무처리에 있어 도드라지는 특징 중 하나는 슈퍼비젼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인데 오랫동안 지속해온 실천경험은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지식, 기술 과 실천지혜가 축적되기 마련이고 이는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수퍼비젼이라는 형태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무성을 실현해가게 한다. 따라서 발제자께서종적, 횡적 구분으로 두 가지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문자격제도의 정착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영역기준에 관한 논의는 계속 되어야한다고 보이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개입수준에 따른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여겨지며,이 또한 사회복지사 표준 직무를 개입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사회복지관련법 제정에 따른 자격부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한 정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의 시설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언급되어 있으나 관련법이 다양해지면서 자격명과 자격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의예; 정신보건 복지사, 아동지도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직업상담사등등) 본인의 견해로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정착되면 각기 다른 자격조건을 제시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로서 해당분야의 전문 복지사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각 직능 및학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목 배정시간 강화 및 실천기술 강화 / 실습기관 인증제 / 대학내 현장경험 교수 및 전공교수 배치 / 양성제도 폐지/ 특수 대학원 교육 보완/ 도입필요."

사회복지사로서의 내면화된 가치는 전문가에게 요청되는 지식체계를 갖추고 현장적 용 기술의 실습과 훈련을 통해 실무태도 내지 실천행위로 완성된다. 따라서 사회복 지사는 대학과 현장의 양면 교육이 전제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현 행제도상 시험위주의 최소기준만을 갖추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늘어 날 경우 현장의 실무능력이 부족한 함량미달의 자격자 배출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발제자께서는 교육기관 인증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인증 제가 법적 효력을 가질 만큼 의무화 되는 것이 전제 되어야 가능 할 것임을 전제하 고 그 내용에 다음 몇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대학교육의 이수 교과목을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되 전공과 목의 배정시간을 3학점으로 강화하여 학과와 상관없이 1교시,2교시로 8과목을 개설 하여 속성으로 시험응시자격을 취득 하도록 하는 파행적 운영을 막아야한다.

둘째, 교과목에 실천기술 부분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두 과목을 좀더 세분화하여 개인대상 실천기술, 가족대상 실천기술, 집단 및 조직 대상실천 기술, 의 네 과목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사례관리론을 필수 과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 행정론 또한 실무에서 필요한 기술위주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교수의 현장경험 및 전공교수의 배치를 강제하여야 한다. 일부 사이버 대학, 특수 대학원을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다. 이는 과목이름만 같을 뿐 현장실무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들의 경우 한국적 복지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공허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실천 현장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의 예방을 위하여 전공교수의 비율을 과목설치 신청 시 강제하거나 , 교수 임용시 현장경험을 연구경력으로 일정비율 환산하는 방식 등을 고려 할 수 있겠다.

넷째, 실습기관 인증제도의도입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이는 파행적 실습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질적인 실습을 받음으로 향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즉시 투입이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누가 인증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수퍼바이저와 실습기관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실습내용과 절차는 어떠해야하는지 등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장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요 과중한 업무에 한 가지 업무를 더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 될수 있다. 실습전담업무를 할 코디네이터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습기관에 제출하는 실습 비를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습비 부담주체에 관한 논의도 첨가되어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섯째, 양성교육의 폐지이다.

양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배출은 현장의 필요인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 되어 수급면에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역할 면에서도 1,2급 사회복지사가 하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이 또한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원봉사나 자선사업으로서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는 선행일 뿐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습과는 다르다. 이에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하기위해서라면 당연히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토론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대안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변화와 발전은 일정부분 희생과 양보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자격제도가 안정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민에게 전달 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친다.

	M	E	M	0
	•••••	••	••••	•••••
)))				
•	••••			

	M	E	M	0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회복지시 지격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인 쇄 2009년 10월 7일

발 행 2009년 10월 7일

발행처 국회의원 정하균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739호

TEL: 02) 784-6399 FAX: 02) 788-3739

http://www.goodwheel.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에클라트 2층 202호

TEL: 02) 786-0845~7 FAX: 02) 786-0191 http://www.welfare.net/